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사후관리 매뉴얼

YOUTH ACTIVITY PROGRAM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CONTENTS



Chapter 01

01

I. 사후관리의 이해	5
1. 사후관리란?	6
2. 사후관리 관련 행정처분	9
3. 사후관리 시작하기	15

Chapter 02

02

II. 사후관리 절차별 주요내용 및 방법	17
1. 인증수련활동 운영	18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22
3. 인증수련활동 변경	26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35
5. 유효기간 연장	48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55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63
8. 인증수련활동 홍보	67

Chapter 03

03

III. 관련법령 및 인증제도 운영규정	69
------------------------------	-----------

사후관리의 이해

- 1 사후관리란?
- 2 사후관리 관련 행정처분
- 3 사후관리 시작하기



1. 사후관리란?

가. 사후관리의 목적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수련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인증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급

나. 사후관리의 의무

인증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 제37조의2에 의하여 다음의 '인증을 받은 자의 책임'을 준수하여 인증활동 운영

- ① 인증 받은 사항대로의 프로그램 운영
- ② 사후관리 관련 규정 준수
- ③ 인증수련활동의 실시 일자 통보
- ④ 인증수련활동 실시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통보
- ⑤ 청소년에게 안전한 활동 제공
- ⑥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포트폴리오 관리
- ⑦ 그 밖의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다. 사후관리의 중요성 및 법적근거

▶ 사후관리 중요성

구분	내용
기관의 신뢰성	-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 시 기관의 유·무형상 손실 발생 -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 사후관리는 기관의 운영력이 높다는 증거로, 해당 기관은 기관 이미지 향상 및 인증수련활동 운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사회적 책임	- 법적 제도인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는 운영담당자의 의무 -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은 인증제도와 청소년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후관리의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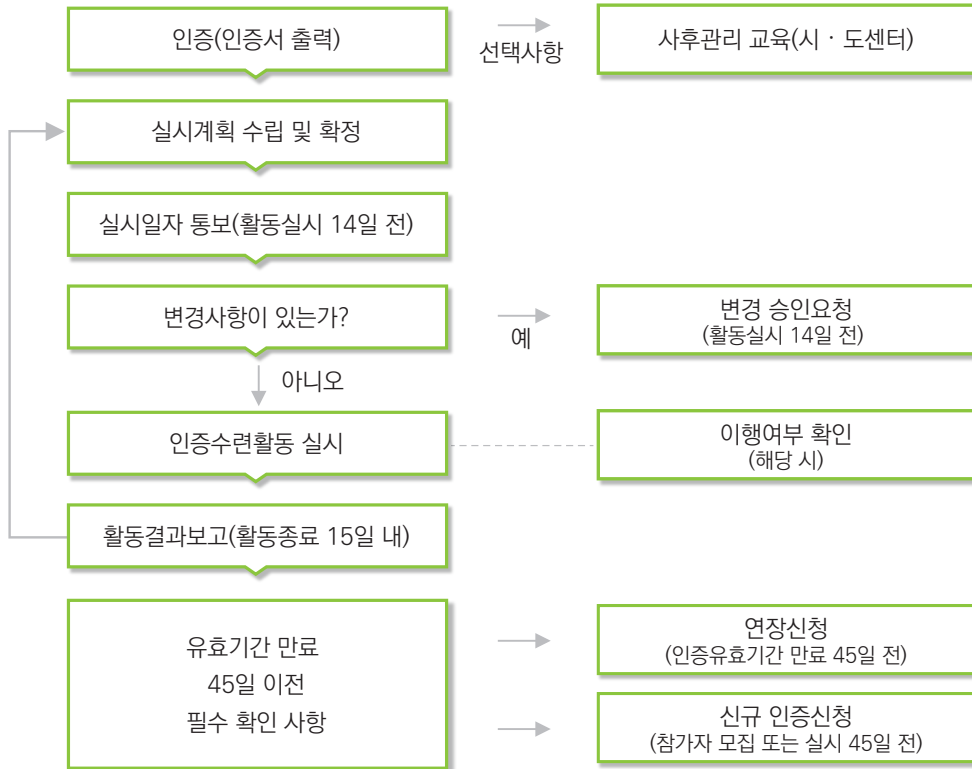
라. 사후관리의 종류 및 체계

▶ 사후관리의 종류

구분	내용	처리기간
활동 실시 일자 통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실시 일시 및 참가 인원, 단체명(단체일 경우)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	활동 실시 14일 전
변경	인증 받은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받는 것	
활동결과보고	인증활동의 종료 후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참가청소년의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것 (청소년 기록제공 기간,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	활동 종료 15일 이내
유효기간 연장	인증 받은 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
이행여부확인	인증수련활동의 실시가 인증 받은 사항대로 운영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여 인증 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는 것	상시
수시점검	인증수련활동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행정처분	인증제도 관련 법·운영규정 등을 위반 시 운영기관에게 행하는 행정행위	



▶ 사후관리의 체계



▶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후관리

- 활동 실시 전: 실시일자 통보(실시 14일 전)
- 활동 실시 후: 활동결과보고(활동종료 후 15일 내 등재)
 - ※ 실시일자 통보 및 활동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증 수련활동으로 운영 인정 불가

▶ 필요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사후관리

- 변경: 인증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활동 실시 14일 전)
- 연장: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유효기간 만료 45일 전)
-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행여부 확인, 수시점검
 - ※ 수행방법은 각 항목별 매뉴얼 세부내용 참조



2. 사후관리 관련 행정처분

행정처분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 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취소	3개월 정지	취소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	경고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취소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활동 실시 계획을 사전에 인증하는 절차 특성 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됨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제2호

인증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에 의거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② 다만 미실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인증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③ 미실시의 기준 : 인증위원회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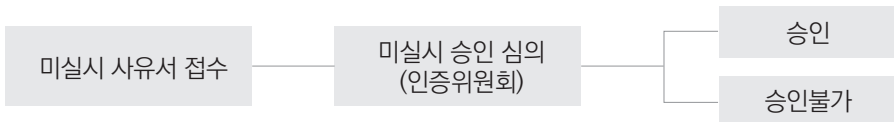


[참고] 미 실시 기간 산정 기준

- ▶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운영 기준 :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각 1년
 예) 유효기간이 2014. 3. 12.~2018. 3. 11.일 경우,매년 3월 12일 ~ 다음연도 3월 11일 간 1회 이상 운영이 완료되어야 함
 * 인증수련활동 운영 : 실시일자 통보된 인증수련활동의 활동결과보고 등재 완료 기준
- ▶ 미 실시 사유서는 2018. 3. 11.(1년 기준일)로부터 45일 이전인 2018. 1. 25.부터 14일 이전인 2018. 2. 25. 까지 제출 가능함

④ 미 실시 사유서 접수 및 세부내용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제출서류 : 미 실시 승인 요청공문 1부, 미 실시 사유서(온라인 등록), 증빙자료
- ㉢ 제출기한 : 해당 프로그램의 미 실시 발생 14일 전까지 제출
- ㉣ 처리절차



[참고] 미 실시 사유의 승인기준(운영규정 제42조제3항)

- ▶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활동 실시 일자를 미리 지정하여 인증 받은 경우
 - ② 활동 특성 상 최초활동 실시 후 1년 이내에 재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 ③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 사후관리란?

2 사후관리 관련 행정처분

3 사후관리 시작하기

[등록방법]

신고/인증/일반활동

운영프로그램 현황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인증 > 인증프로그램 운영 > 운영프로그램 현황

활동명: [입력하세요] | 인정번호: [] | 유형: [전체] | 활동영역: [전체]

제60 호	과목	시기	결과보고	활동 실시/미실시
		2016-11-26 10:00 - 2016-11-27 14:00	승인	2018년 10월 31일까지 미실시 사유서 또는 실시일자정보를 하여야 합니다.

장기대상: 중고 | 모집방법: | 유효기간: 2016-10-18 ~ 2018-10-18

실시일자 통보서 | 실시일자 권위 | 미실시 사유서 등록 | 미실시 권위

① 운영프로그램 현황으로 접속하여 해당 활동이 미실시 사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

활동 미실시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인증 > 인증프로그램 운영 > 활동 미실시

■ 인증수련활동의 실시 의무 및 미실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 3에 의거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실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인증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실시의 기준: 인증위원회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미실시 사유서 제출

② 미실시 사유서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하단의 '미실시 사유서 등록' 클릭 후 '미실시 사유서 제출'로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제3호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인증받은 사항과 현저하게 다른 운영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41조

인증수련활동 이행여부 확인결과 판정에 따른 보완개선 및 시정요청을 받은 자가 지정한 기한 내 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증수련활동 이행여부 확인 심의 결과 보완·개선 요청을 받았으나 그 조치 결과를 지정한 기한인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운영 당시 적용된 개별단위 프로그램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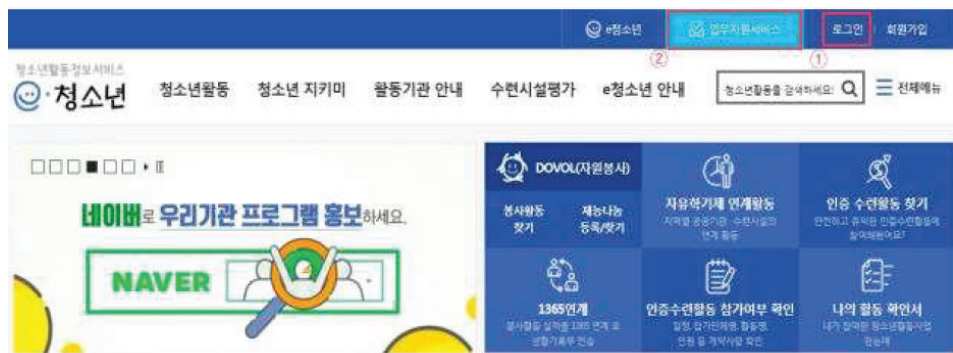
1 사후관리란?

2 사후관리 관련 행정처분

3 사후관리 시작하기



3. 사후관리 시작하기



① 회원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바 중 ② [업무지원서비스] 버튼 클릭



③ '업무지원서비스' 메뉴 중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인증' 버튼 클릭

④ 왼쪽 게시판 중 '인증프로그램 운영' - '운영프로그램 현황' 클릭

⑤ '운영프로그램 현황'에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 확인

※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시설단체에 지도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후관리를 할 지도자는 시설단체를 검색하여 담당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절차별 주요내용 및 방법

- 1 인증수련활동 운영
-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 3 인증수련활동 변경
-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 5 유효기간 연장
-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 8 인증수련활동 홍보



1. 인증수련활동 운영

1) 인증수련활동의 인증서 출력

- ◆ 인증을 받은 기관에게 인증을 확인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교부
- ◆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신청 시 4년 이내 자율 설정 ※인증 신청 접수 후, 변경 불가
- ◆ 인증서 발급방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서 출력

① 운영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 현황 화면임
- 우측 각 메뉴 버튼을 눌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프로그램명을 클릭하면 인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③ 인증신청서 하단의 '인증서 출력' 클릭

④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
※ 인증서는 공문서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스크린 캡처나 PDF파일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2)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의 의무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수령 후 잘 보이는 곳에 인증서 비치
- ◆ 지도자가 인증 받은 사항을 인지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 ◆ 인증수련활동 참여 지도자 관리 및 활동 실시 전 지도자 서약서, 교육일지 관리
- ◆ 비상연락망과 활동장소 전반에 대한 특징 파악
- ◆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할 시 참가자에게 안전 교육, 인증수련활동 소개 및 활동기록과 포트폴
- ◆ 리오 활용에 대한 내용 안내
- ◆ 인증 받은 사항대로의 프로그램 운영
-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처리의 기한 준수
- ◆ 필요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후관리 교육 참가

3) 인증수련활동 마크사용

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마크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웃는 표정 형상화
- 파란 색 : 청소년의 싱그러움과 활기참
- 녹색 : 안전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 주황색 : 진취적인 활동성과 열정

다운로드 : e-청소년(www.youth.go.kr)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게시판 → 자료실 → '인증마크' 다운로드



나. 인증마크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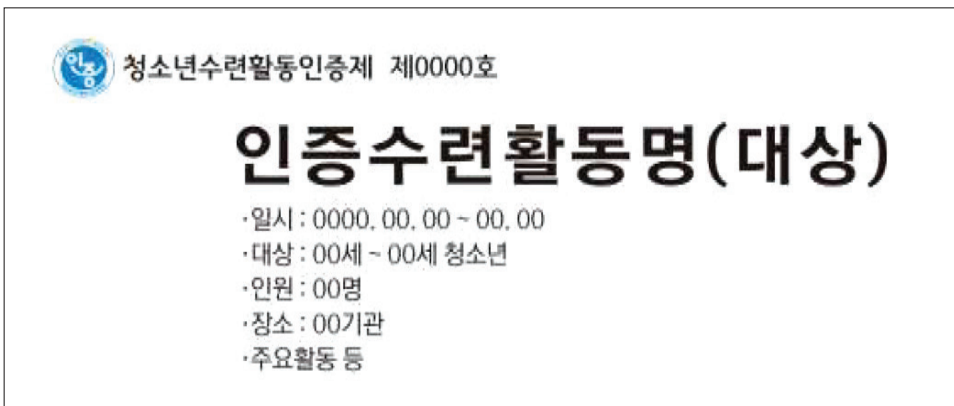
- ① 운영기관은 인증 받은 인증수련활동에 사용
 - ②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수련활동명, 참가대상 범위를 함께 표시
 - ③ 인증마크 활용 지침 매뉴얼에 따라 색상체계, 공간규정, 사용금지 규정에 맞게 사용
 - ④ 인증마크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최소규격(높이 12mm) 준수
 - ⑤ 인증마크를 오용할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오용사례 : 운영기관 내 모든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것처럼 표기하거나 인증수련활동이 아닌 운영기관이 '인증'받은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

다. 인증마크 사용 예시

- ① 인증마크 사용 시 인증번호와 활동명, 참가대상을 함께 표시해야 함
→ 현수막 등



→ 홈페이지 · 블로그 게시 및 포스터 등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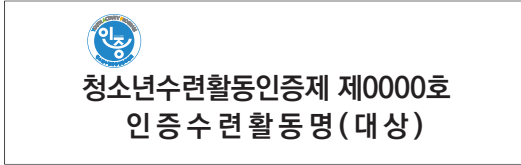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 리플렛 및 자료집 등



라. 오용 사례

① 인증마크를 오용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 내 모든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것처럼 표기



→ 인증수련활동이 아닌 운영기관이 '인증'받은 것처럼 표기



→ 인증마크를 변형, 가공

회전	다른비율로 확대	가공	최소규격 이하 사용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1) 활동 실시 일자 통보란?

-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43조
- ◆ 인증활동을 실시하려는 자는 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해 활동 실시일자 통보 의무 발생
- ◆ 실시일자 통보는 1회차 활동부터 실시 14일 전 시스템을 통해 실시일자, 참가자 연령 및 인원 등을 통보하는 것
- ◆ 실시일자 통보를 통해 참가청소년에게 인증활동의 운영정보 및 활동기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음

[참고] 사용자 제공화면 : 통보된 실시일자, 대상, 인원 등의 정보가 노출됨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찾기

초

캠프 - 2박 3일 -



• 분류 인증시스템 연계

• 인원 및 연령 218명

• 지역

• 참가비

• 활동일시

일기

• 모집기간

• 참가대상

• 자량운영

• 인증번호

• 신고번호

• 인증유효기간

• 숙박여부

• 기관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담당자이메일

• 관련사이트

• 팩스번호

※ 해당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였으며 문의 및 신청은 기관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추가등록하기

기관찾아가기

활동접하기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2) 실시일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인증수련활동으로 운영 불가
- ◆ 실시일자가 사전 통보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 활동결과보고(청소년 활동기록 제공) 불가능
- ◆ 실시일자 통보를 하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으로 홍보 한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거나 제40조2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 실시일자가 14일 전까지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인증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통보 날짜를 준수하여 참가자를 모집해야 함



3) 실시일자 통보방법

- ① 운영프로그램 현황 화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활동실시/미실시' 클릭
- ② '실시일자 통보서' 클릭

- ③ 인증번호와 기관명, 활동명이 자동 기입된 실시일자 통보서에 활동일자와 참여인원, 운영담당자, 참가형태 등을 빠짐없이 작성
- ④ 작성완료 후 '저장' - '통보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통보하기' 버튼을 클릭
 - ※ [저장]만 클릭하고 통보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는 실시일자 통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실시일자 통보 시 유의사항

▶ 용어해설

- 작성중 : 통보하지 않고 내용을 저장만 한 상태
- 통보 : 실시일자통보가 완료된 상태
- 확인 : 실시일자통보 사항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확인한 상태

▶ 실시일자 통보의 변경 및 취소 발생 시

- '작성중' 상태에서는 실시일자 수정이 가능합니다. 통보 내용을 수정 후 [저장]-[통보하기]를 누르시면 수정사항이 반영됩니다.
- '통보' 또는 '확인'상태에서는 실시일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실시일자가 변경된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 실시일자 통보 시 꼭 확인할 사항

- 통보하는 날로부터 14일 이후 일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여러 회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일 경우 일자 또는 시기 입력란에 있는 [추가]버튼을 눌러 실제 회기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 * 회기 : 인증수련활동이 운영되는 전 일정 중, 2일 이상 진행이 되나 숙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회차 : 활동 대상이 모집되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실시되는 회기의 묶음, 인증수련활동이 운영되는 전 일정(개회에서 폐회, 숙박 및 이동형 해당)
- 인증 받은 일정표와 실제 실시할 일정이 다를 경우, 실시일자 통보 시 실제 일정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단체 숙박형은 인증받은 개별프로그램 사용 시, 일정표에 필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가능한 사항 : 프로그램 순서, 운영 시간 (ex 09:00 시작 12:00 마무리 → 13:00 시작 16:00 마무리 로 실시일자 통보 가능)
 - 변경 불가능한 사항 :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 추가 운영, 프로그램 소요 시간
- 실시일자 통보내역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가 공개됩니다. 통보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인증수련활동 변경

1) 인증수련활동 변경이란?

-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39조
- ◆ 인증수련활동 운영 계획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이용
- ◆ 하여 변경 신청·승인 후 운영하여야 함(단,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 항목과 불가능 항목, 자율 변경 가능 항목이 있음)
- ◆ 변경승인 요청은 활동 실시 14일 이전에 하여야 함

2) 변경 세부내용

가. 변경요청 가능 항목

항목	세부내용	
프로그램	<p>활동의 목적과 목표, 주요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한 일부 단위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경우(지도자 회의록, 청소년들의 평가 설문결과 등 프로그램 변경의 근거자료 함께 제출)</p> <p>※ 프로그램 변경은 인증수련활동 1회 이상 운영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발전을 위한 일부 단위프로그램의 변경만 가능하며, 주요 프로그램 등이 변경될 경우 신규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p>	
예산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비용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지도자	운영담당자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운영담당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담당자 자격요건 및 해당 기관 재직 확인 시)
	전문인력	자격요건 만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전문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및 재직 승낙서 여부 확인 시)
	전문지도자	인사이동,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전문지도자 및 전문성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전문지도자의 전문성 수준 확인 시)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항목	세부내용
활동장	활동장 사용여건, 점검내역 갱신 등의 사유로 활동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장 확보, 유지·관리 내역 확인 시)
기관정보	운영주체, 사업자번호, 기관명, 시설유형, 대표자, 운영대표자가 변경 등의 사유로 기관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관정보 변경의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부 의결)
보험	보험서류 갱신, 보험가입 기관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인 8천만 원 이상, 대물 2백만 원 이상 확인 시)
숙박관리	숙박 공간 사용여건, 숙박안전관리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숙박 확보, 숙박안전관리 인력 혹은 계획 기준 확인 시)
영양관리	영양사 인사이동, 영양관리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양사 자격요건, 영양관리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 확인 시)
이동관리	이동장소 변동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동관리를 위한 차량, 안전관리 계획 확인 시)
휴식관리	이동장소, 이동거리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태 확인 및 휴식계획 확인 시)

나. 변경요청 불가능 항목

항목	세부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목적·목표의 변경 및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목적 및 목표에 명시된 단위프로그램 변경 불가)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의 규칙 제15조의8의 중요프로그램 변경 - 활동 일정의 변경 (예 : 1박2일 → 2박3일, 1박2일 → 6시간, 4회기 → 2회기 등) - 입소식과 퇴소식의 운영 순서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프로그램의 변경
인원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대상의 연령을 바꾸어 운영하려는 경우 (예 : 초등학교 →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 중학교 등) - 기존 인증 받은 인원수의 증가를 위한 변경 (예 : 100명 → 150명 등) (※ 인원 축소 변경 완료 후 최초 인증 시의 인원으로 증가 변경 불가)



다. 운영기관 자율 변경 가능 항목

항목	세부내용
프로그램	<p>-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내용은 동일하나 단위프로그램의 운영 순서를 변경</p> <p>- 인증신청 시 제시한 대체 프로그램으로의 변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만 적용</p> </div> <p>- 개별단위프로그램의 운영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단, 활동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함)</p> <p>-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중 규칙 제15조8의 중요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 동일 기관에서 인증 받은 개별단위프로그램으로 대체 또는 교체하여 실시하는 경우(단, 활동 실시 일자 통보 시 운영하려는 개별단위 프로그램 통보 필수)</p> <p>→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개별단위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단축·제외하거나 또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학교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p>
인원	인증신청 인원 이내의 변경
기타	활동 실시 일자 통보를 통한 활동 실시일 변경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 자주 발생하는 보완 요청사항
 - 등록된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변경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변경신청 시 변경신청서만 등록하거나 인증신청서의 내용만 수정하는 경우
 - 등록된 인증 증빙서류의 서식과 확인요소가 현행 기준과 상이한 경우
 - 간편인증신청을 적용하여 공통5~6번, 개별1~3번 서류를 같음시켰을 경우 ※변경신청에서는 간편인증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변경 신청 시 확인할 사항
 -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7일 이내 변경에 대한 결과가 안내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 보완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안내에 따라 보완조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심사 배정 후 변경 신청이 불가하오니, 실시 14일 전에 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자료 등록 tip

- 변경 시, 새로 등록되는 증빙서류는 변경시기에 따라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 시점에서 활용하는 현 서식에 맞춰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변경 불가항목(주요프로그램, 활동일정, 중요프로그램, 연령, 인원수)이 변경될 경우 신규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인증기준 및 증빙자료 수정내용 (통합양식 기준)	
지도자	운영담당자	인증신청서	운영담당자
		증빙서류	공통 3번
	전문지도자	증빙서류	공통 1번
	전문인력	증빙서류	공통 3번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주요내용	
	증빙서류	공통 1번, 변경 근거자료 • 공통 1번 증빙서류에 지도자 회의록, 평가 설문결과 등 프로그램 변경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활동장	인증신청서	활동장소	
	증빙서류	공통 1, 5번 • 원의 활동장으로 변경하여 보험 가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 공통2, 6번을 함께 변경하여야 함 • 간편인증신청이 되어 있어도 활동장이 변경될 경우 활동장 안전점검서류를 모두 제시하여야함	
기관정보	첨부서류	기관정보 변경 승인요청서 • 기관정보 변경의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부 의결	
예산	증빙서류	인증신청서, 공통 2번	



3) 변경 신청 방법

가. 변경신청서 작성

[활동]

📍 참가대상 : 조
📍 모집방법 : 단체모집
📍 유효기간 :

변경/연장 진행중인 건이 없습니다.

변경 신청
연장 신청

활동실시/미실시

결과보고/포트폴리오

< 변경/연장 현황

이탈/보완개선요청

홍보

① 변경하려는 활동명 우측의 '변경/연장 현황' 버튼을 누른 후 [변경 신청] 버튼 클릭

변경신청서
인증신청서
(통합)기분별 확인 요소

▶ 변경신청내역 작성후 변경사항과 관련된 인증프로그램 증빙서류 부분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기본정보

인증번호	
기관명	
활동명	

■ 변경내역등록

*구분	<input type="checkbox"/> 운영담당자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내용 <input type="checkbox"/> 예산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input type="checkbox"/> 활동환경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 <input type="checkbox"/> 개별기준	
*변경 전		0/300bytes
*변경 후		0/300bytes
*변경 사유		0/400bytes

저장
목록

③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역을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구분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
- 변경 전 · 후 : 주요 변경내역 전 · 후를 비교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 변경사유 :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유 작성

※ 변경신청서를 저장하지 않으면 인증신청서와 등록(작성)된 인증기준(증빙서류)수정 불가

3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사후관리 매뉴얼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나. 인증신청서 변경사항 수정

대상	전체인원	명				
	참가자연령대	만 9~12세 (초등)	만 13~15세 (중등)	만 16~18세 (고등)	만 19~24세	기타(가족)
		명	0명	0명	0명	0명

인증 유효기간: 신청프로그램이 인증될 경우 유효기간은 을 희망합니다.

인증 기간:

■ 인증진행상태

인증신청 처리단계: 변경신청

인증신청 처리상태: 작성중

전면판(0건) | 기존 운영 댓글 조회 | 제출 | 변경신청서 삭제 | 수정 | 목록

① 인증신청서에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② 변경되는 내용을 모두 수정하여 작성한 후 인증신청서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 변경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인증신청서 하단의 [변경신청서 삭제]버튼을 누르면 신청내역이 삭제됩니다.

다. 기준별 확인요소 또는 증빙서류 변경사항 수정

[증빙서류 없이 웹에 직접 입력하여 인증신청 한 경우]

· 자격요건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파일첨부	승낙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hwp
	자격증빙	수상인명구조자격.pdf

변경전 내역 보기 | 전면판(0건) | 기존 운영 댓글 조회 | 제출 | 변경신청서 삭제 | 수정 | 목록

① [(통합)기준별 확인 요소]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기준별 수정 가능
 ※ 반드시 인증기준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변경되는 내용이 저장됨
 ② 변경되는 내용을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인증기준별로 [저장] 버튼을 클릭
 ※ 반드시 인증기준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변경되는 내용이 저장됨



[웹증빙 이전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인증신청 한 경우]

변경신청서	인증신청서	증빙서류
-------	-------	------

[재출](#) [수정](#) [이전](#) [목록](#)

※ 각 항목의 증빙서류가 저장된 경우 초록색으로 체크표시(✓)됩니다.

✓ 공통 - 1 프로그램구성

변경전		
순번	파일명	등록일시
1	공통기준1 프로그램 구	.hwp

첨부파일

변경후		
순번	파일명	등록일시
1	공통기준1 프로그램 구;	.hwp

- ① [증빙서류] 상단의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증빙서류의 수정 가능
- ② 수정하고자 하는 인증기준 클릭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증빙서류 삭제 후 수정 완료된 증빙서류 등록
※ 인증기준별 1개의 증빙서류만 증빙 가능하므로 반드시 변경 이전의 서류는 삭제해주세요.
- ③ 변경이 완료된 증빙서류를 찾아 저장하고 등록이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
※ 반드시 인증기준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변경되는 내용이 저장됩니다.

■ 인증진행상태

인증신청 처리단계	변경신청
인증신청 처리상태	작성중

[전면판\(0건\)](#) [Q 기준운영 댓글 조회](#) [재출](#) [변경신청서 삭제](#) [수정](#) [목록](#)

- ④ 변경사항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인증신청서]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변경신청 상태가 '작성중'으로 보입니다.
인증신청서 하단의 [인증신청 처리상태]가 '제출'로 되어야 변경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라. 변경보안요청 확인 및 조치하기

신고/인증/일반활동

변경신청 현황조회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인증 > 변경 신청 > 변경신청 현황조회

인증번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활동명: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기관명: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유형: 전체

등록일자: 2017-01-18 ~ 2020-01-18 | 상태: 전체

Q 검색

인증번호	기관명	활동명	유형	등록일자	상태	보안요청사유
3			학교단체합		작성중	보안요청사유
4			기본형-합일		보완요청	보안요청사유
5			학교단체합 (교외집회화)		보완완료	
6			기본형-합일		작성중	
7			기본형-회기		접수처리 (여가)	
8			학교단체합 (교외집회화)		제출	

① 좌측 메뉴의 '변경신청'의 '변경신청 현황조회' 클릭 후 해당 프로그램의 오른쪽의 '보안요청사유 조회'를 클릭

변경신청 현황조회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인증 > 변경 신청 > 변경신청 현황조회

인증번호: 0272F048-07 | 기관명: | 등록일자: 2017-01-18

Q 검색

인증번호	기관명	등록일자	보안요청일자	보안요청사유	보안요청내용	일자	상태	보안요청사유
1		0272F048-07			공통1 - 일정표에 각 단위프로그램명 구분을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의 항기 단위프로그램 내용에 자와 관련된 활동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단위프로그램 목표와 주제에 맞는 일정인지 검토하시어 필요 시 계획서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변경의 경우, 활동의 목적과 목표, 주요 프로그램이	1-13	제출	
2		0272F04C-07				1-13	제출	
3		1979F07A-06				1-13	작성중	
4		0509A07A-04				1-10	보완요청	보안요청사유

■ 인증진행상태

인증신청 처리단계	변경검토
인증신청 처리상태	보완요청

전면판 (0건) | 기준운영 댓글 조회 | 변경보완완료 | 수정 | 목록

② '보안요청사유 조회'를 클릭하여 팝업창의 보안요청사유 내용 확인

③ 보안요청사유내용 확인 후 활동명을 클릭하고 수정사항 반영

※ 증빙서류에 보안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에 등록(작성)된 인증기준(증빙서류) 삭제 후 재등록

④ 보완완료 후 인증신청서의 '변경보완완료' 클릭

※ 보완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경보완완료 버튼 클릭



마. 변경제출 취소하기

① [인증신청서]하단의 '변경신청서 삭제' 클릭 후 팝업창의 '확인' 클릭
 ※ 변경 제출 및 변경신청 후 보완요청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변경제출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선 문의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1)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이란?

-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44조, 제45조
- ◆ 인증수련활동 종료 후 그 결과를 청소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15일 이내에 통보
- ◆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기록/유지/관리하여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정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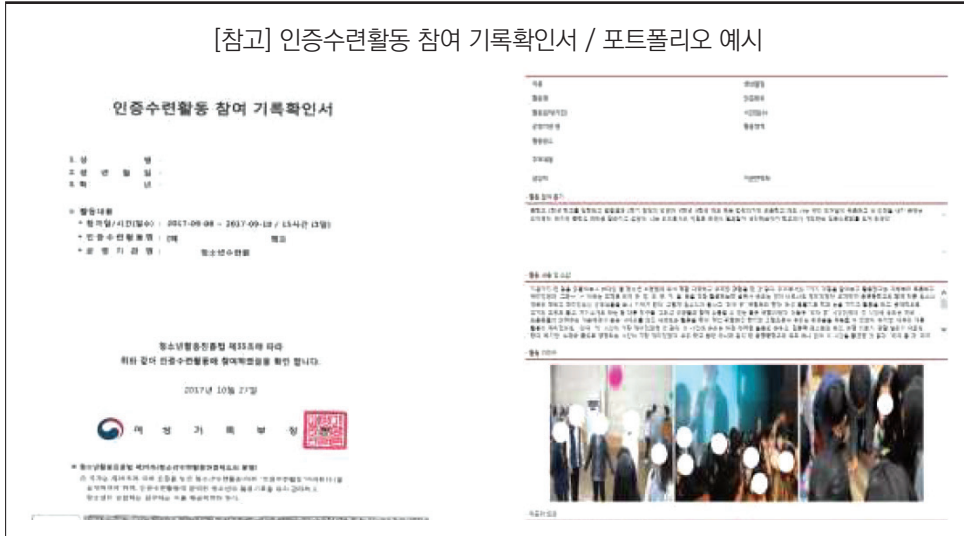
2) 참여청소년 활동기록의 종류

가. 인증수련활동 참여 기록확인서

- ① 참여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활동내용을 포함한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발급됨

나. 포트폴리오

- ① 청소년 스스로 활동내용과 소감을 기입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참여기록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음
 - ※ 활동결과 기록이 승인된 건에 한해 청소년이 포트폴리오 등재 가능
- ② 운영기관은 운영된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포트폴리오가 작성되면 이를 승인해야 함
 - ※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은 게시판)자료실의 게시글 참고



다. 인증수련활동 결과보고 기록 내용(필수)

영역	기록내용	
	세부 항목	작성 기준
운영개요	자동기입	인증번호, 활동명, 활동유형, 활동기간, 특별기준 적용 여부
	참가인원	실제 참가한 청소년의 수
	운영담당자	활동 시, 운영담당자 역할을 한 지도자명/ 연락처
	사전신고여부	사전 신고 유무 확인
참가자 정보	자동기입	모집형태, 교급
	확인 사항	참가자의 인솔자 (단체, 학교단체의 경우만 작성)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	주요프로그램 내용	운영된 일정의 주요프로그램 내용
	활동 운영 시 기타 특이사항 및 의견	안전사고 발생 등 기타 특이사항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 발생 사항 기입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라.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 내용(필수)

영역	기록내용	
	세부 항목	작성 기준
참가 청소년 상세정보	성명	띄어쓰기 하지 않은 한글 이름 기입 ※ 개별 참가자 확인용(이름이 외자일 경우 그대로 기입)
	생년월일	8자리 생년월일 ※ 개별 참가자 확인용
	학교명	학교명 ※ 활동기록 발급을 위한 실제 참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참가 단체 또는 운영기관명을 통일되게 작성
	학년	참가 당시 학년 ※ 활동기록 발급을 위한 실제 참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로 일괄 작성(청소년 안내 필수)
	반	참가 당시 반 ※ 활동기록 발급을 위한 실제 참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로 일괄 작성(청소년 안내 필수)
	참여일수	해당 청소년이 참여한 일수 ※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의 일수를 입력하기 위함 ※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기입하지 않음
	참여시간	해당 청소년이 참여한 시간 ※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의 시간을 입력하기 위함 ※ 프로그램 시간을 입력하며, 쉬는 시간, 취침시간, 식사 시간을 뺀 순 프로그램 시간만을 입력함



마. 활동결과기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활용 관련 법적근거

법 령	
<p>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5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p>	<p>①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p>	<p>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생략)</p> <p>7.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생략)</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생략)</p>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참고]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안내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
- 나. 개인정보 활용처 : e청소년(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증수련활동의 활동 기록 등재
- 라.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반
- 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활동결과보고의 승인 시 까지
- ※ 활동결과보고 승인 후, e청소년의 기록은 자동암호화 되어 정보를 제공한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3) 활동결과보고 방법

가. 활동결과보고 등재방법

신규/인증/일반활동

활동 결과보고

인증번호: [입력 가능] | 활동명: [입력 가능] | 기관명: [입력 가능]

인증일자: [입력 가능] | 상태: [입력 가능] | 검색

인증번호	기관명	유형	활동명	자수	상태	실시일자
1			[미제출]	1회	[미제출]	

① '활동결과보고' 클릭 ② 결과보고 등재 프로그램을 검색 후 결과 보고의 상태를 확인
③ [미제출] 상태의 활동명을 클릭하여 결과보고 창으로 이동



① 운영개요

인증번호	제 호	기관명
활동명	기본명	*참가인원
활동유형	기본명	명
*활동기간	박 1 일 중 시간	
*사전신고여부	<input type="radio"/> 신고 <input checked="" type="radio"/> 신고번호찾기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운영담당자 성명		*운영담당자 연락처
*특별기준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 포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② 참가자정보

*수집형태	<input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단체 <input checked="" type="radio"/> 학교단체	세종특별자치	*연락처
학교단체정보	학교명	인솔교사	직책(담당업무)
*참가연령(학년)	<input type="checkbox"/> 만 9~12세(초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만 13~15세(중학교) <input type="checkbox"/> 만 16~18세(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만 19~24세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족)		

③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

*주요프로그램내용

0/40000bytes

안전사항 발생 현황 등 기타 특이사항

0/40000bytes

④ 활동일정표

⑤ 보험가입증권

활동장소	구분	보험내역
	- 상해보험	간편 인증신청으로 증빙이 감응되었습니다. 단, 향후 인증수련활동 운영 시에는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타보험가입서류
등록된 기타보험가입서류가 없습니다.

⑥ 안전사고발생

안전사고 발생 있음 발생

사고 인원	
*사고 내용	선택
사고 처리	선택
처리 결과	선택

⑦ [제출] [의지안] [목록]

- ① 운영개요 : 실제 참가청소년의 수, 실제 운영을 총괄한 운영담당자의 성명, 실제 진행 된 기간 및 시간 기재
· 신고대상일 경우, [신고번호찾기]를 클릭 후 신고 수리번호 기입
- ② 참가자 정보 : 단체 및 학교대상 프로그램일 경우 참가단체의 인솔자 정보 기입(연락처는 단체의 대표 번호도 기입 가능)
- ③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 :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두줄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사항 발생현황 및 기타 공유사항이 있으면 작성
- ④ 활동일정표 : 인증받은 사항대로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 ⑤ 보험가입증권 : 웹으로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증권에 대한 내역을 따로 확인하고 있음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⑥ 안전사고발생 :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을 선택 후 사고 내용 기입
- ⑦ 모든 내용 작성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보고 등재가 완료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상태별 결과보고 진행사항

▶ 상태별 결과보고 진행사항

- 미제출 : 해당 실시건의 결과보고가 미제출된 상태
- 제출 : 해당 실시건의 결과보고가 작성되어 제출된 상태
- 보완요청 : 진흥원에서 결과보고 검토 후 보완 사항이 발생한 상태
 - ※ 보완 조치 후 '보완완료'를 클릭하지 않으면 보완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완완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 해당 실시건의 결과보고가 승인되어 청소년의 기록확인서 출력이 가능한 상태

나. 활동기록 등재방법

신고/인증/일반활동

활동기록

신고 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연장 · 인증프로그램 변경 · 활동기록

인증번호: [입력하세요] 활동명: [입력하세요]

등록일자: [선택] 상태: [전체]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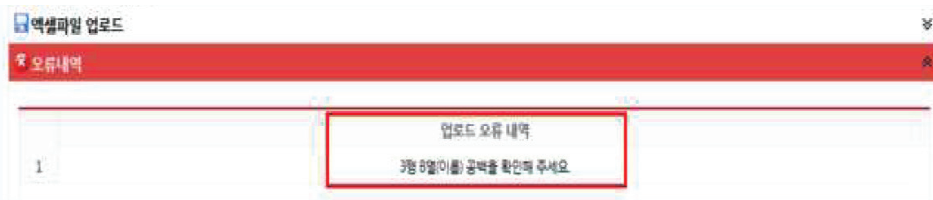
인증번호	기관명	유형	활동명	주수	상태	발사일자
1			1과	1과	미제출	
2			1과	1과	미제출	

① '활동기록'을 클릭 후 ② 활동기록 등재 할 프로그램을 검색 후 활동 기록의 상태 확인
 ③ [미제출] 상태의 활동명을 클릭하여 활동기록 창으로 이동



- ④ 활동기록 등록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 후 저장
 - ※ 활동기록 등록양식은 결과보고 등록 화면 또는 [게시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⑤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파일 등록
- ⑥ '저장' 버튼을 눌러 시스템에 저장
 - ※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결과보고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고] 엑셀파일 등록 처리결과 오류 시



→ 오류 발생 시 등록된 엑셀파일의 수정 필요부분이 안내됩니다. 등록된 엑셀파일의 '행' 과 '열'을 확인 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년월일 기입 오류, 참여시간 기입 오류 등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다. 포트폴리오 승인

① 운영프로그램 현황에서 해당 프로그램 검색 후 우측의 '결과보고/포트폴리오' 클릭

② '포트폴리오 관리' - '해당 활동명' 클릭

③ [제출] 또는 [보완] 상태의 포트폴리오가 확인될 시, 청소년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미리보고 지도자 의견 작성 후 승인 또는 보완 클릭

Q. 참여 청소년의 포트폴리오 등재 대상이 조회되지 않아요.

A. 포트폴리오는 승인된 활동기록에 한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나의 활동 기록 찾기]를 통해 저장한 내역만 등재 대상에 노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등록방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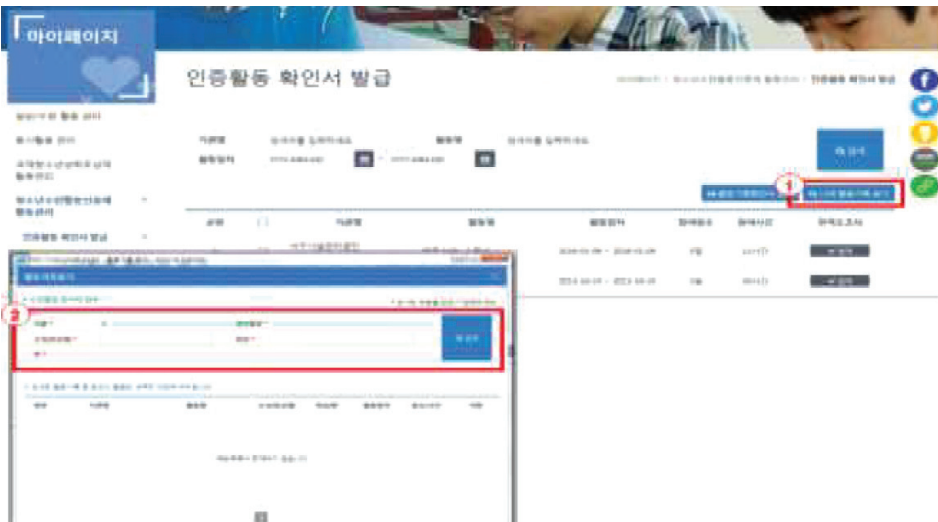


라. 청소년용 활동기록 발급 및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

[청소년용 활동기록 발급 방법]



- ① 청소년 아이디로 로그인 후 '수련활동인증제활동'의 확인서 출력 바로가기 클릭
- ② 또는 좌측 메뉴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클릭



- ① '나의 활동기록 찾기' 버튼 클릭
- ② 활동에 참여했을 당시 학교, 학년, 반을 입력 후 '검색' 클릭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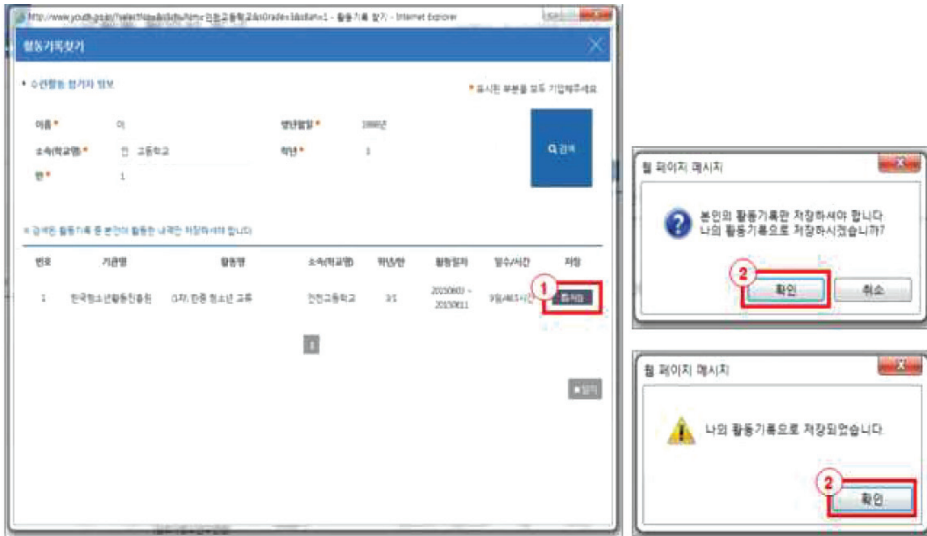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 ① 검색된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버튼 클릭
- ② 팝업창이 생성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활동기록 저장

인증활동 확인서 발급

마이페이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 인증활동 확인서 발급



- ① 해당 건이 목록에 저장되었는지 확인
- ② 활동기록확인서 출력을 원할 ①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활동기록확인서 출력' 클릭.
- ③ 만족도 조사에 참여 * 선택사항입니다.



[청소년용 포트폴리오 등록 방법]

마이페이지

포트폴리오 작성

마이페이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 포트폴리오 작성

발반/수련 활동 관리

봉사활동 관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관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1. 인증활동 확인서 발급

2. 포트폴리오 작성

(시달단체 업무지원서비스)

순번	유형	활동명	활동일자	상태	재종	주소	이력보기 최다출력	관리
1	<input type="checkbox"/>	특별 캠프 세상 만들기 '만이재팬'	2014-02-24 - 2014-02-26	완료			이력보기 최다출력	

- ① 좌측 메뉴의 '포트폴리오 작성' 클릭
- ②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된 활동기록 검색

포트폴리오 작성

마이페이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 포트폴리오 작성

배경선택

색상선택

내용선택

1. OK

취소

- ① 배경 선택 후 '선택' 버튼 클릭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포트폴리오 작성 마이페이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 포트폴리오 작성

이름: 이주형 **1** 생년월일: 1990117

활동명: **2** 인증번호:

활동일자(기간): - 시간(일수):

운영기관명: 활동영역:

활동장소:

주요내용:

담당자: 기관 연락처:

1 활동명 오른쪽의 '검색' 버튼 클릭

2 포트폴리오를 등록하려는 활동명을 클릭하여 승인된 활동기록을 불러옴

- ① 활동명 오른쪽의 '검색' 버튼 클릭
- ② 포트폴리오를 등록하려는 활동명을 클릭하여 승인된 활동기록을 불러옴

포트폴리오 작성 마이페이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관리 > 포트폴리오 작성

이름: 이 생년월일: 1990

활동명: 향후 청소년 교육 인증번호:

활동일자(기간): 2018061 - 20180611 시간(일수): 주말4.5시간

운영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영역: 교육활동

활동장소: 국내-울진학사리캠, 영국-북경, 다윈, 본계, 영도, 교당

주요내용: 국내 - 발대식, 사관직교육
영국 : 대학입문, 기업견학, 청소년교육 및 토론회, 가정방문 문화체험 등

담당자: 노 기관 연락처: 02-390-2900

3

3 포트폴리오 내용 작성 후 '등록' 버튼 클릭



5. 유효기간 연장

1) 유효기간 연장이란?

-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제1,2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38조
-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번호가 부여된 개별 활동의 고유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 ◆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증수련활동은 자동으로 종료 됨
 - ※ 유효기간 연장 시 현재 인증기준 대상 프로그램에 적용된 인증기준이 상이한 경우, 현재 인증기준에 맞게 변경 후 연장신청을 하여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세부내용

- ◆ 제출서류 : 연장신청서, 인증신청서, 증빙서류, 운영보고서 1부
 - ※ 운영보고서 양식은 게시판)자료실의 게시글 참고

연장심사 대상 기간 산정 기준

- ▶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운영 기준 :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각 1년
예) 유효기간이 2014. 3. 12. ~ 2018. 3. 11.일 경우
매년 3월 12일 ~ 다음연도 3월 11일 간 1회 이상 운영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인증수련활동 운영 : 실시일자 통보된 인증수련활동의 활동결과보고 등재 완료 기준
- ▶ 유효기간 연장심사 기간
 - ① 최초로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인증 시작일부터 연장심사 대상 기간
 - ② 유효기간 연장 이력이 있는 경우 : 연장된 유효기간이 연장심사 대상 기간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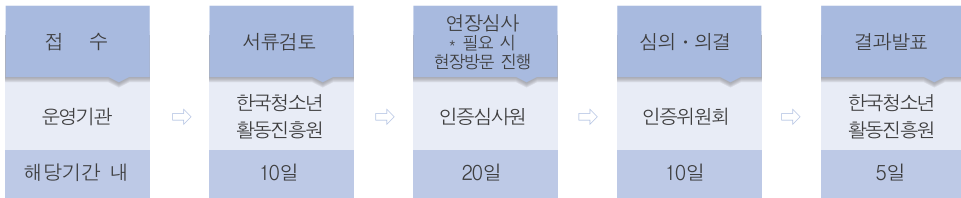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예) 유효기간이 2013. 3. 12. ~ 2017. 3. 11.인 활동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받은 후 (유효기간: 2013. 3. 12.~2018. 3. 11.) 해당 활동을 다시 연장 신청한 경우 연장심사 대상 기간은 2017. 3. 12. ~ 2018. 3. 11. 임

◆ 연장 심사 및 심의 절차



◆ 연장 세부 내용

- 유효기간 연장 기간 : 심사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유효기간 종료(연장불가)
- 접수 전 확인사항 ※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연장신청 가능

- ① 대상 프로그램이 현 인증기준과 일치하며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 ②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운영하였는가?
- ③ 이행여부 확인 결과 시정 및 부적합 항목이 없는가?



3) 유효기간 연장 심사 기준

가. 유효기간 연장 확인기준 및 요소

영역	확인 기준	확인 요소
기본 요소	인증기준의 도달여부 확인 기 인증프로그램의 일치여부 확인	- 현 시점의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를 충족하였는가? (필요 시, 활동환경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기존 인증프로그램과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이 동일한가?
프로그램	인증 사항 준수여부 확인	- 인증신청 시 계획(프로그램 구성, 지도력, 활동환경)에 따라 운영하였는가? - 프로그램 운영 이후,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사후 관리	인증 프로그램 사후관리 준수 여부 확인	- 변경승인 요청 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였는가? - 실시일자통보의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운영하였는가? - 이행여부확인결과 시정 및 부적합 사항이 없는가?
활동 결과	인증 프로그램 결과보고 준수 여부	- 활동결과를 인증정보시스템에 기록하였는가? - 활동결과 보고의 기한을 준수하여 등재하였는가?

나. 유효기간 연장여부 판정기준

① 확인요소에 대한 평점기준

2점	기준을 준수하고 그 내용이 확인됨
1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②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판정 기준

결과	판정기준	조치사항
1년연장	모든 확인요소가 2점 이상인 경우	이행여부확인 실시
연장불가	확인요소 중 1가지 이상이 1점 이하인 경우	유효기간의 종료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다. 유효기간 연장 결과 적용

구분	내용
유효기간연장	유효기간 연장 판정결과는 연장 승인 이후 즉시 적용
유효기간만료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심의결과 연장불가로 판정된 경우 - 인증서에 기입된 인증프로그램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연장신청 시 운영보고서 기재 요령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아래 양식의 운영보고서를 작성 후 첨부
 - 작성내용 : 프로그램 기본정보, 운영·평가결과 확인, 사후관리 관련 기타 특이사항
 - 등록방법 :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신청서류를 연장신청서 화면에 첨부
- ※ 운영보고서 양식은 게시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제999호 인증수련활동운영보고서

인증번호	운영기관명
활동명	
유효기간	운영담당자
확인사항	
운영 결과	· 제XXXX호 인증수련활동이 인증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함
평가 결과	· 제XXXX호 인증수련활동의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효과성 및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함
필수 조건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아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함 1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 기간 중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째 1회 이상 운영하였는가? 2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 기간 중 이행여부 확인 결과 사정 및 부적합 사항이 없는가? 3 활동기록 등재기한 미준수 및 미등재안이 없는가?

연장 신청 프로그램의 정보를 작성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결과, 평가결과, 필수조건 충족여부를 표기
※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p>사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연장심사 대상 기간 중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일자 통보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 인증사항 변경 신청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p>* 실시일자 통보 또는 인증사항 변경과 관련된 통보사항 및 기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록하여 제출</p>	<p>☞ 유효기간 연장심사 대상 기간 중 사후 관리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기록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일자 통보 기한 준수여부 - 인증사항 변경 신청 기한 준수여부 <p>☞ 연장신청 일자(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와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 제출</p>
<p>위와 같이 제 호 인증수련활동의 운영결과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귀하</p>	

4)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기

제5 8호
류분별

참가대상 : 초
다지방법

유효기간: 2016-07-06 ~ 2019-07-05

변경/연장 진행중인 건이 없습니다.

변경 신청 연장 신청

활동실시/미 실시

결과보고/포트폴리오

1 변경/연장 현황

이행/보완개선요청

홍보

① 해당 활동명 우측의 '변경/연장 현황'을 눌러 상태 확인

※ 변경신청 중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연장신청 전 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장신청' 버튼 클릭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운영프로그램 현황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인증 > 인증프로그램 운영 > 운영프로그램 현황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증빙서류

1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인증번호	기관명
활동명	유효기간	2016-07-06 ~ 2019-07-05
신청사유	연장신청사유	

위와 같이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17년 06월 27일
신청인(대표자):
최소년 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효기간 연장 여부: (0)화, (1)년연장

최초유효기간	연장신청일	연장유효기간
--------	-------	--------

자주기 없습니다.

2 저장 목록

- ① 연장신청서의 해당 내용 작성
- 연장신청사유 :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
 - '연장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② '저장' 버튼 클릭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증빙서류

증빙서류 상세로 돌아가기 목록

본 건 항목의 증빙서류가 저장된 경우 중복적으로 체크표시됩니다

공통 - 1 - 프로그램구성

인증기준번호	공통 - 1
기준	프로그램구성
기준설명	프로그램이 내용과 일치 평가방법은 현재 필수년 통상 표준규정 용량 여부를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3

파일을 선택하세요. 파일을 선택하세요.

업로드

- ③ 증빙서류 탭으로 이동하여 각 기준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저장' 버튼 클릭
- ④ 연장신청서 탭으로 이동하여 하단의 '연장신청 제출' 버튼 클릭



나.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기

신고/인증 / 일반활동

연장신청 현황조회

신고인증/일반활동 > 승인활동 현황 > 유효기간 연장 > 연장신청 현황조회

인증번호: [입력가능 입력하세요] 활동명: [입력가능 입력하세요]

기관명: [입력가능 입력하세요] 유형: 전체

*등록일자: 2014-09-27 ~ 2017-09-27 상태: 전체

[검색]

기관명	활동명	유형	등록일자	상태	보완요청
1 일	수	4학년	2017-09-27	보완요청	연장보완 요청 사유 조회
2 일	대	4학년	2015-09-08	실외활동	

1 유효기간 연장

2 연장보완 요청 사유 조회

① 유효기간 연장의 '연장신청 현황조회' 로 접속

② 연장신청 진행중인 프로그램 우측의 '연장보완 요청 사유 조회 버튼 클릭

연장 보완요청 사유

▶ 보완요청사유

보완요청일자: 2017-08-27

보완요청자: 이종비

보완요청내용: 연장신청사유를 자세하게 작성바랍니다.
- 문의 : 02-330-2854 (인증운영부)

[닫기]

연장신청서 인증신청서 증명서류

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번호	기관명
활동명	
인증기간	2016-07-06 ~ 2019-07-05
연장을 신청합니다.	

3 연장보완완료 휴 삭제 수정

③ 팝업창의 보완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연장신청내용을 수정한 후 연장신청서 하단의 '연장보완완료' 버튼 클릭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1)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이란?

-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40조
- ◆ 인증활동의 실시가 인증 받은 사항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여 인증 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는 것
- ◆ 인증활동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활동의 실시를 위한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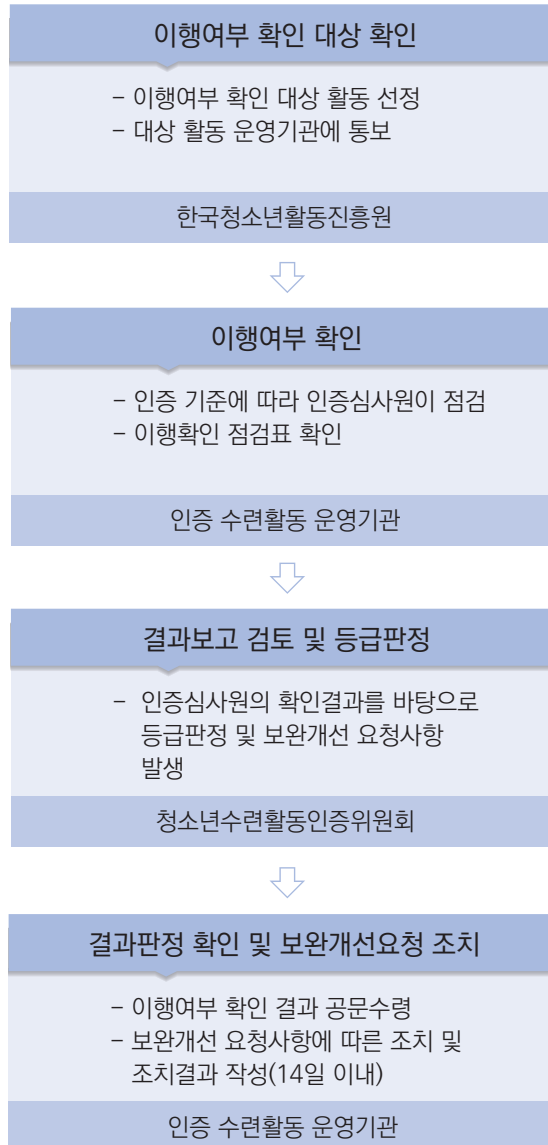
2) 이행여부 확인(현장점검) 대상

- ◆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전 필수 인증 대상 활동
 - ◆ 인증수련활동 운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활동 실시일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이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 최초로 인증을 받은 시설 및 단체의 경우
 - ◆ 기타 인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이행여부 확인 일정 및 대상은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정하며 운영기관의 선택 또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음



3) 이행여부확인 절차 및 내용

가. 이행여부확인 절차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나. 운영기관 확인사항

구분	내용
이행여부 확인 실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연락 및 공문수령(필요 시 생략가능한 절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여부 확인 대상 프로그램 선정 유선연락 후 공문 발송 • 공문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대상 활동 및 실시일자 확인 - 심사일자 확인 :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실시 - 활동 실시 전 필수 확인사항 체크 : 인증사항 대비 변경사항 유무, 안전 보험 가입유무, 지도자서약서 및 지도자 성범죄경력조회서(숙박·이동형) 확인, 활동기록 등재를 위한 참가청소년 신청정보 확인, 인증사항 सू지, 지도자 안전교육, 활동장 특이사항 점검 등 확인 필요
이행여부 확인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담당자, 인증심사원 참석 • 인증심사원 요청 자료 비치 - 회의시작(인증활동 실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장소 등 안내 • 심사원의 질문에 답변 • 심사원과 이행여부 확인 내용 협의 등 - 이행여부 확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원이 지도자, 참여청소년 등 관계자 인터뷰 요청 시 지원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참가청소년에게 요청하여 인증심사원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심사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자료제시 및 답변 • 인증심사원과 이행여부 확인 점검표 확인(점검내용의 사실여부를 운영기관에서 확인)
이행여부 확인 후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활동 기록 등재 : 이행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활동이 끝나면 15일 이내 청소년의 참여활동기록 등재 - 보완·개선 요구 사항의 작성 : 보완·개선 사항이 요청되었을 경우 14일 이내 조치사항을 e청소년 (www.youth.go.kr)에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한 내용은 보완개선 요청방법 참조 ※ 보완개선요청 후 14일 이내 미 조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다. 이행여부확인 확인기준 및 요소(운영규정 제40조제5항 관련)

① 공통기준

영역	확인기준	확인요소
활동프로그램	1. 대상 및 일정	-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상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2. 자원 및 기자재	- 사용하는 기자재 등 자원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청소년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상태 및 수량이 적합하다.
	3. 평가 및 관리	-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게 활동기록 등 인증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력	4. 전문성 관리	- 운영담당자와 전문 인력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전문지도자는 계획된 수준대로 참여하고 있다.
	5. 배치인력 관리	- 프로그램별 지도자 수는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지도자서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6. 지도역량 관리	- 지도자 교육결과 및 개별 지도자의 숙지수준이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 대해 강요나 폭력이 없고, 지도자의 역할을 준수하고 있다.
활동환경	7. 확보 및 점검	-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활동장소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활동장소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8. 교육 및 보험	- 참여청소년에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전원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위생 및 관리	-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② 개별기준

영역	확인기준	확인요소
숙박/ 이동형	1. 숙박관리	- 참여청소년 인원에 적합한 숙박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 야간생활 지도는 인증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안전 및 영양관리	- 안전관리 담당자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배치된 지도자의 성범죄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게 적합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
이동형	3. 이동 및 휴식관리	-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 및 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및 지도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

라. 이행여부 확인결과 판정기준(운영규정 제41조 관련)

영역	확인기준	확인요소
적합	- 인증사항대로 운영 - 보완개선 사항이 없는 경우 - 1점 항목 : 없음	- 향후 2년간 이행여부 현장 확인 대상 제외 가능 ※ 우려사항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가능
보완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나 그 대안이 인증수준을 충족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이행확인 점검표에 1점 항목이 없는 경우	- 향후 1년간 이행여부 현장확인 대상 제외 가능 ※ 보완개선 조치사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치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실시 가능
시정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시하였으나 동기, 내용 등이 경미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인증 받은 사항대로 운영하였으나 참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위험 요소가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 차기 회차 이행확인 실시 가능 ※ 시정조치사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치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실시 가능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시하여 인증사항의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요청받은 보완개선 및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정한 14일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인증 취소 검토
-----	--	--

연장신청 시 운영보고서 기재 요령

▶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활동을 실시한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에 따라 해당 활동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위반사항	행정처분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 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1차	2차	3차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취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인증사항과 다르게 운영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향후 5년 간 인증신청이 제한됨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4) 보완개선 및 시정 요청

가. 보완개선 및 시정 요청이란?

- ① 인증수련활동의 이행여부확인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완개선 및 시정 사항에 대해 요청받은 것
- ② 조치기간 :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 ③ 요청받은 보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여부확인 결과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보완개선사항 유형에 따른 조치

구분	조치방법
즉시 보완개선이 가능한 경우	- 보완·개선사항의 실행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보완·개선 조치내용 작성 및 보완·개선의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서류 첨부
보완개선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 인증사항의 변경(수정)이 필요한 경우 · 사안에 따라 즉시 조치가 어려울 경우 보완·개선 조치내용에 변경 계획 작성 후, 차기 활동 실시 전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승인 후에 실시하여야 함 ※ 추후 별도의 보완개선 조치결과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보완개선 조치사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확인하며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5) 보완개선 조치 방법

제5- 8호
구분별

활동실시/미실시
결과보고/포토관리요
변경/연장 현황
이행/보완개선요청
종보

이행여부 확인 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장고하시어 조치 바랍니다.
보완개선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보완개선조치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②

① 증가대상 : 조
② 요청방법 : 개별요청
③ 유효기간 : 2016-07-06 ~ 2020-07-05

① 운영프로그램 현황 화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이행/보완개선요청' 클릭
② '보완개선조치' 클릭

■ 이행심사 보완결과 조회

번호	요청사항	조치결과
1	(프로그램 운영 준수)인증을 받은 사정대로 운영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

③

③ 보완개선 요청사항을 확인 후 '수정' 클릭

■ 이행심사 보완결과 조회

번호	요청사항	조치결과
1	(프로그램 운영 준수)인증을 받은 사정대로 운영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

④

④ 보완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한 후 ⑤ '보완개선조치완료' 클릭
※ 사안에 따라 즉시 조치가 어려운 보완개선 요청사항은 보완개선 조치내용에 변경 계획을 작성 후, 차기 활동 실시 전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승인 후에 실시

⑤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1)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이란?

-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40조의2
- ◆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수련활동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것
- ◆ 인증수련활동 운영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현장방문 및 후속조치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2)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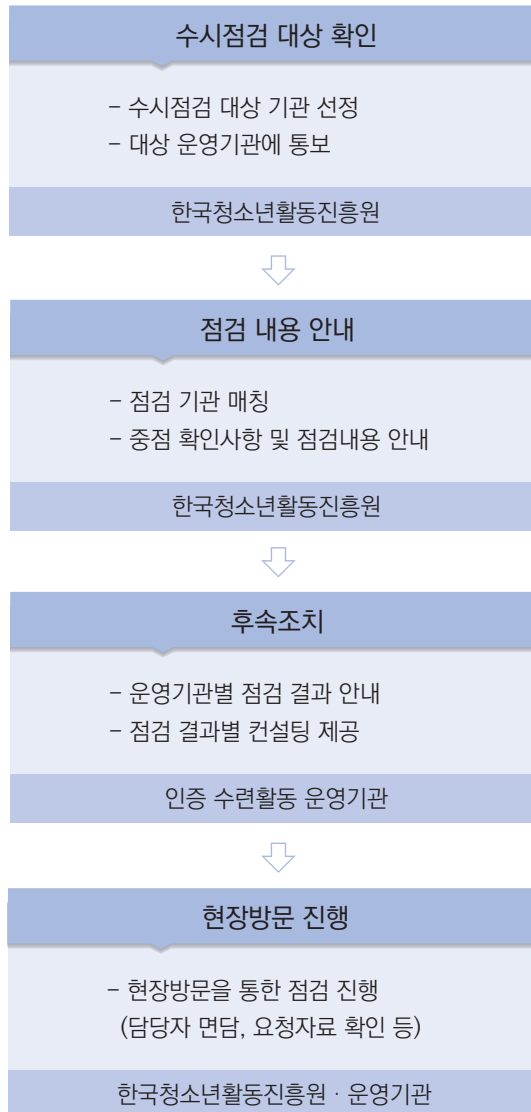
- ◆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자 또는 지도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법 제36조의3의 사항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 제43조제1항에 따른 활동 실시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이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 기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수련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시점검의 대상은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선정



3)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절차 및 내용

가. 수시점검 절차



①
인증수련활동
운영

②
활동 실시
일자 통보

③
인증수련활동
변경

④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⑤
유효기간
연장

⑥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⑦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⑧
인증수련활동
홍보

나. 운영기관 확인사항

점검영역	확인요소
지도자 자격	- 운영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재직 유무 - (안전)전문인력 배치 유무, 지도자 사전필수 안전교육 일지 유무
공간설비	- 사업자등록증 및 수련시설등록증 유무 - 활동장 안전점검, 안전점검기록표(1년 이내) 유무
안전관리	- 필수 의약(용)품 구비 유무 - 안전사고대책 수립 유무 - 보험가입 확인 서류
프로그램 운영	- 인증활동 변경사항(운영담당자, (안전)전문인력, 활동장 등) 유무 - 인증프로그램 유지 유무
홍보	- 인증 마크사용 시 인증번호, 활동명, 대상 기입 유무
신고	- 숙박형, 150명 이상, 위험도 높은 활동 운영 시 홍보 14일전 신고 유무
영양관리 (숙박형, 이동형)	- 영양사의 자격 및 재직 유무 - (영양사 미재직시) 영양사자격, 영업허가(등록)증, 식단확인증 확인
숙박안전관리 (숙박형, 이동형)	- 숙박공간 확보서류 유무 - 소방안전관리자 재직 및 위탁서류 유무



이행여부 확인과 수시점검의 비교

구분	이행여부 확인	수시점검
근거	- 인증제 운영규정 제40조	- 인증제 운영규정 제40조의2
목적	- 인증프로그램의 인증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인증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진행방법	- 활동 실시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 운영기관과 일정 조율 후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대상 선정기준	- 인증 후 최초 실시되는 프로그램, 의무 인증 대상 등	- 실시일자 통보 없이 운영되는 프로그램 - 사회적 요구 등 시기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등
후속조치	-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여부 확인 등급 부여 - 각 등급별 보완개선조치 필요	- 점검결과 안내 및 컨설팅 제공

1 인증수련활동 운영

2 활동 실시 일자 통보

3 인증수련활동 변경

4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

5 유효기간 연장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7 인증수련활동 수시점검

8 인증수련활동 홍보



8. 인증수련활동 홍보

1) 인증수련활동 홍보 방법

◆ 인증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보 가능

제5 8호
구분별 프로그램 홍보자료 등록하세요.

활동실시/마무리
결과보고/프로그램리포트
변경/연장 현황
이행/보완개요집

참가대상 : 초
모집방법 : 개별모집
유효기간 : 2016-07-05 ~ 2020-07-05

홍보관리

홍보

① 홍보하고자 하는 활동명 우측의 '홍보'를 눌러 ② '홍보관리' 버튼 클릭

1 홍보 자료

* 참가자 모집기간

활동유형

* 모집사기

* 홍보 이미지

* 운영담당자의 프로그램 이미지

QR Code 생성 내역

QR Code 이미지

QR Code 세부내용

문의하기

기타내용

* 홍보노출여부

문자(SMS) 수신여부

2

생성

삭제



- ① 홍보기간, 모집시기, 홍보이미지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홍보노출여부'를 '노출'로 지정한 후 ② '저장' 버튼 클릭 ※ 홍보노출여부를 '미노출'로 지정하면 홍보내용을 등록하여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홍보 자료

참가자 모집기간	문의받기여부	노출여부	등록일	프로세스
2017-08-26~2017-08-30	예	예	2017-08-27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수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삭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등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목록</div>

- ③ 새로운 홍보자료를 등록할 경우 '등록' 버튼 클릭
·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홍보내용을 수정하여 등록하거나 삭제할 경우 프로세스 항목의 '수정' 또는 '삭제' 클릭

활동정보 기관정보 **인증정보** 신고정보 [인쇄](#)

모집 시기

2017.12.12 ~ 2017.12.12
· 세부 내용과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일자는 2017.03.29 ~ 입니다. 활동일자와 날짜가 공란하세요? [일기예보 보기](#)

신청방법

·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등록된 URL이 없습니다.

운영담당자의 프로그램 이야기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문의하기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기타내용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④ 등록된 내용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의 [인증홍보]로 공개됩니다.
· 모집시기, 신청방법, 운영담당자의 프로그램 이야기 등이 노출됩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문의하기]에 등록되며, 홍보 시 SMS 수신여부를 체크하면 문의 글에 대한 알림이 활성화됩니다.
※ 홍보에 등록된 내용은 인증수련활동 검색 화면에 노출됩니다. 인증 사항과 다른 내용이 등록되거나 불필요한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pink color. It is decorated with several abstract, rounded rectangular shapes in various shades of pink, some overlapping. There are also some dotted lines scattered across the background. In the center, there is a white square with a thin black border. Inside this square, the text is centered.

**관련법령 및 인증제
운영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3. 2., 2017. 3. 21.>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13.>
-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본조신설 2013. 5. 28.]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 [본조신설 2014. 1. 21.]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본조신설 2014. 1. 21.]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1. 21.]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2. 3.>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2. 3.>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1. 21.]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

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 21.]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21.]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4. 1. 21.)]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전문개정 2014. 1. 21.]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삭제 <2015. 8. 3.>
- ② 삭제 <2015. 8. 3.>
-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8. 3.>
-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

-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4. 7. 21.]

제21조(인증신청·절차 및 방법 등)

-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 ① 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7. 2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6. 8. 29.>]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삭제 <2013. 11. 20.>
[전문개정 2010. 8. 11.]

[별표 5] <개정 2018. 6.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호	200만원
다. 법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호	200만원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3호	200만원
마. 법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200만원
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5호	200만원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제6호	200만원
아.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	200만원
자. 법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2	200만원
차.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3	200만원

카.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8호	200만원
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법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제12조에 따른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법 제72조제2항제9호	200만원
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0호	200만원
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1호	200만원
거.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2호	100만원
너.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300만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21.]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9.>

[본조신설 2008. 1. 28.]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21.]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전문성,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본조신설 2014. 7. 21.]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본조신설 2014. 7. 21.]

[총선 제15조의4는 제15조의7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4에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별표 6] <신설 2014.7.21>

[별표 8] <개정 2014.7.21.>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제9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내용·횡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시설이 붕괴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3개월 운영 중지	
2.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3.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5.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별표 7] <개정 2019. 8. 28.>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2제2호 관련)

구 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7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3 제1항제1호	취소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3개월	취소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법 제36조의3 제1항제3호	3개월 정지	6개월	취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17. 7. 26.>

제13조(보험등의 가입)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 1.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 2.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제한 또는 금지·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학교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5. 1. 20.>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 ①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수련활동”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을 말한다.
2. “기본형 활동”은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참가를 승인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교급별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2017. 8. 23.>
3. “숙박형 활동”이란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4. “이동형 활동”이란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이란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 8. 23.>
6. “개별단위프로그램”이란 제5호의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7. 8. 23.>
7.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제28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말한다.
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활동기록 제공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인증제도의 운영)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 35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등 인증제도를 운영 한다. <개정 2017. 8. 23.>
- ②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센터”라 한다)는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 하여 인증받은 청소년활동의 홍보 및 지원, 사후관리 교육운영 등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개 정 2014. 7. 21., 2015. 12. 17.>

제 2 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제4조(기능)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의견청취 및 보완·개선 요구
2.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 인증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의 유지·관리 조치
5.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제한 조치
6. 영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제정
7. 영 제22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선발·활용
8. 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 지정 <개정 2014. 7. 21.>
9.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23.>

제5조(회의)

-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② 법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까지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이하 “인증위원”이라 한 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인 증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리고,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7. 8. 23.>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회 회의에 불참하는 인증위원이 사전에 인증위원장에게 위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된 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인증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건에 대해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 8. 23.>

제6조(간사)

- ① 인증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활동진흥원의 인증제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 ① 인증위원회는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목적, 운영 기간, 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21., 2017. 8. 23.>

제8조(의견청취)

- ① 인증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참고인, 인증심사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7. 8. 23.>
-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7.>

제9조(부의)

- ① 인증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의안을 첨부하여 소집요청 일로부터 10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 ② 간사는 인증위원장으로부터 인증위원회 소집 결정을 받아 부의안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소집통지서를 회의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인증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③ 인증위원장은 부의 사항 중 보고 안건이나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건과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인증위원장은 각 인증위원의 서면결의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면결의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10조(의사록)

- ① 간사는 인증위원회 의사 진행 및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인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 ② 회의에 부의한 원안, 의사록, 서면결의록 및 기타 참고 서류는 간사의 책임 하에 활동진흥원에 보관한다.
- ③ 인증위원회 기록물의 보존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인 증 심 사 원

<삭제-인증심사원 운영규정 신규신설 2015. 12. 17.>

제 4 장 수련활동의 인증

제26조(인증 신청 대상의 범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및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이거나 규칙 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 ② 삭 제 <2017. 8. 2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2.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3.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인증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7. 8. 23.>

④ 인증 신청 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 종사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17. 8. 23.>
3. 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종사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17. 8. 23.>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6.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5. 12. 17., 2017. 8. 23.>

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에 관련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6조의2(운영담당자의 보수교육)

- ① 제26조제4항제6호에 따른 운영담당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3.>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운영담당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8.23.>
- ③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활동진흥원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26조의3(전문인력 교육과정의 지정절차 등)

① 규칙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전문자격 혹은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인력 교육 운영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증빙 서류
3.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과목을 포함한 최소 1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3. 상처 및 골절처치
4. 관련법령 등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별표9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전문인력 교육 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수증을 발급한 때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15. 12. 17., 2017. 8. 23.>

[본조신설 2014. 7. 21.]

제26조의4(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역할)

①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전문인력 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의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 ②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보고서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26조의5(개별단위프로그램 인증)

-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인증받은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제2조제6호의 개별 단위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개별단위프로그램 인증은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8. 23.]

제26조의6(보급형프로그램 지정)

-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급형프로그램을 지정하고 활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형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중 인증위원회가 지정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진흥원
2.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센터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인증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보급형프로그램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8조 제2항의 공통기준 중 프로그램과 지도력 영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26조의7(보급형프로그램 인증)

- ① 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제26조의6 제1항에서 지정된 보급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보급형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27조(인증 신청 및 접수)

-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2015. 12. 17., 2017. 8. 23.>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내용의 사전검토 및 형식요건 검사를 통해 인증심사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 ③ 활동진흥원은 제2항의 형식요건 검사 및 내용의 보완이 완료된 경우 인증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인증신청자가 인증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 기준)

- ① 법 제36조와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공통기준, 개별기준 및 특별기준으로 구성하며, 각 인증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7. 21., 2015. 12. 17.>
- ② 공통기준은 모든 수련활동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 환경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7. 8. 23.>
- ③ 개별기준은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각각 유형별 인증기준과 확인요소를 말한다. 다만 기본형활동에 식사 및 이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개별기준과 확인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7. 8. 23.>
- ④ 특별기준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 또는 활동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적 기량이나 안전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로 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⑤ 인증위원회는 인증기준의 증빙을 면제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국제청소년활동의 경우 인증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인증 절차 및 처리기간)

-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인증 가부를 인증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
- ② 인증신청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이의신청과 재심사 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인증 절차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 12. 17.>

제30조(인증 심사)

-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인증 신청이 인증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 1건 당 2명 이상을 배정하여 심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시에는 인증심사원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7. 3., 2014. 7. 21.>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배정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이하 “심사원 운영규정” 라 한다) 제16조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2. 17.>

- ④ 인증심사에 배정된 인증심사원은 별7표4에 따라 심사내용, 심사점수 및 심사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분석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 ⑤ 삭제 <2013. 7. 3.>
- ⑥ 삭제 <2013. 7. 3.>
- ⑦ 인증기준의 평점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15. 12. 17.>
- ⑧ 활동진흥원은 인증심사원간 현저한 심사의견의 차이로 인증과 불인증을 가름하기 어려운 경우 제3의 인증심사원에게 심사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3.>
- ⑨ 삭제 <2017. 8. 23.>

제31조(인증심사 결과 판정)

- ① 인증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심의보류 등으로 인증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으로 하고 활동진흥원에

제출된 자료의 보완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인증기준에 영향이 없고, 해당 기준만을 보완하는 경우
 2. 1/3 미만의 인증기준에 불인증 점수를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4. 7. 21.]

제32조 삭제 <2015. 12. 17>

제33조 삭제 <2015. 12. 17>

제34조(현장방문 심사)

① 활동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출된 인증신청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개정 2014. 7. 21., 2017. 8. 23.>
3. 최초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의 활동인 경우
4. 인증심사 진행 중 해당 활동에 배정된 인증심사원이 요청한 경우

② 현장방문 심사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2015. 12. 17.>

[본조신설 2013.7.3.]

제35조(이의 신청)

- ① 제31조의 인증심사 결과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여부 검토를 포함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2014. 7. 21.>
- ③ 재심사는 현장방문 등 심사원을 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

제36조(인증서 교부) 인증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을 확인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제37조(인증의 표지)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수련활동 진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② 인증마크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의2(인증을 받은 자의 책임)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인증 받은 사항대로의 프로그램 운영
2.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준수
3. 제43조의 활동 실시 일자 통보
4. 인증수련활동 실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활동 진흥원에 즉시 보고
 - 가.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나.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전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활동 결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라.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5. 청소년에게 안전한 활동의 제공
6. 그 밖에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본조신설 2014. 7. 21.]

[전문개정 2017. 8. 23.]

제 5 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8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

-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 받은 사항과 동일한 활동이거나 활동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 ③ 연장심사는 운영결과 및 사후관리 적절성, 연장신청시기의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별표12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5. 12. 17.>
- ④ 인증심사원의 배정은 인증심사원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르며, 연장 심사결과는 별지23호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 심사 판정기준은 별표13과 같다. <신설 2015. 12. 17.>
-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이 휴·폐업 등 더 이상 인증수련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전문개정 2014. 7. 21.]

제39조(인증사항 변경 승인 요청)

- ① 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사항을 변경하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실시 14일 이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사항 변경 승인 요청서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별단위프로그램의 운영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활동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중 규칙 제15조8의 중요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동일 기관에서 인증 받은 개별단위프로그램으로 대체 또는 교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에 따른 활동 실시 일자 통보 시 사용하려는 개별단위프로그램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개별단위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단축·제외하거나 또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학교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1. 활동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활동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참여대상의 교급 또는 연령을 변경하는 경우
 4. 참여대상의 인원수를 늘리는 경우
 5.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의 규칙 제15조8의 중요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인증위원회는 변경 사항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전문개정 2017. 8. 23.]

제40조(인증사항 이행여부확인)

-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원에게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활동진흥원 및 지방센터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2014. 7. 21., 2015. 12. 17., 2017. 8. 23.>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2014. 7. 21., 2017. 8. 23.>
1. 제26조제1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개정 2014. 7. 21., 2017. 8. 23.>
 2. 삭제 <2013. 7. 3.>
 3. 인증수련활동 운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43조에 따른 활동 실시일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 7. 3.>
 5. 기타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이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6. 최초로 인증을 받은 시설 및 단체의 경우
 7. 기타 인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 12. 17.>

- ③ 활동진흥원은 현장 확인을 실시할 경우 인증심사원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인증심사원 운영규정 신설 2015. 12. 17.)
- ④ 제3항에 따라 배정된 인증심사원은 별표5의 절차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를 심사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 2014. 7. 21., 2015. 12. 17>
- ⑤ 인증사항 이행여부확인 기준 및 평점 적용 기준은 각각 별표6, 별표7과 같다. <개정 2015. 12. 17.>

제40조의2(수시점검)

- ①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진흥원, 지방센터,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자 또는 지도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법 제36조의3의 사항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4. 제43조제1항에 따른 활동 실시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5.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이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6. 기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수련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8. 23.]

제41조(이행여부확인 후 조치)

- ① 인증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판정한다. <개정 2017. 8. 23.>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보완개선 요청서를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개정 2015. 12. 17.>
- ③ 이행여부 확인결과 판정에 따른 보완개선 및 시정요청을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조치사항을 활

동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 ④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결과 판정 기준은 별표8와 같다. <개정 2015. 12. 17.>
[전문개정 2014. 7. 21.]

제41조의2(긴급조치 등)

- ① 인증위원회는 이행여부 확인 또는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해당 활동을 운영하는 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시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활동진흥원에 알려야 한다.
- ③ 활동진흥원은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활동진흥원은 시정요청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

[전문개정 2014. 7. 21.]

[전문개정 2017. 8. 23.]

제42조(인증의 취소 등)

-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의 취소나 정지를 명한 경우 인증 받은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나 정지를 받은 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7. 21.>
-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5. 12. 17.>

1. 활동 실시 일자를 미리 지정하여 인증 받은 경우
2. 활동 특성 상 최초활동실시 후 1년 이내에 재실시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8.23.>

제43조(활동 실시 일자 통보)

- ①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인증수련활동 실시 시작 14일 이전에 별지 제

16호 서식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일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받은 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일자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일 전까지 실시일자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7., 2017. 8. 23.>

[전문개정 2014. 7. 21.]

제 6 장 활 동 기 록 관 리

제44조(활동 결과 기록)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인증수련활동 활동 결과보고서를 인증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17. 8. 23.>

[전문개정 2014. 7. 21.]

제45조(활동기록 유지 관리 및 제공)

- ① 활동진흥원은 제44조에 따른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7호 및 제20호 서식에 따른 인증수련활동기록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기록확인서의 유지·관리 및 제공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 7 장 보 칙

제46조(인증정보시스템의 운영) 활동진흥원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법 제36조에 따른 수련활동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47조(수당 등) 활동진흥원은 인증위원, 인증심사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인증 수수료)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인증수련활동의 홍보)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수련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수련활동명, 인증대상 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제50조(인증수련활동 정보 제공) 활동진흥원 및 지방센터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51조(기타사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장이 정하며, 시행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제28조 관련) <개정 2017.8.23.>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숙박형 인증기준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구분	영역/유형	인증 기준	확인 요소	구분	영역/유형	인증기준 (국내/해외)	확인요소 (국내/해외)
공통 기준	활동프로그램	2	9	공통 기준	활동프로그램	2/2	11/11
	지도자	2	8		지도자	2/2	9/9
	활동환경	2	7		활동환경	2/2	7/8
개별 기준	숙박형	3	5	개별 기준	숙박형	3/2	5/3
	이동형	5	7		이동형	5/4	7/5
특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2	4	특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2	4
	학교단체 숙박형	1	3		학교단체 숙박형	1	3

※ 국제청소년활동에서 "국내"라 함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하며, "해외"라 함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인증기준 구성



□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인증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프로그램 구성	1-1 참여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1-2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에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 내용이 설정되고 기술되어 있다.	좌동	좌동
	1-3 프로그램의 일정은 입·퇴소를 포함한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좌동	좌동
	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을 유지·기술되어 있다.	좌동	좌동
	1-5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좌동	좌동
	1-6 프로그램 환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1-7 프로그램 평가계획과 평가도구가 증빙되어 있다.	좌동	좌동
	-	1-8 참가자 구성방법과 사전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좌동
2. 프로그램 자원운영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
	2-2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	2-3 참가비 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다.	좌동

2) 지도력

인증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3. 지도자 자격	3-1 규정 제26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인증신청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2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3-4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3-5 지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예방·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좌동	좌동
		3-6 지도자중 해외활동유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	좌동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4-1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
	4-2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9-1]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은 [별표 9-2]의 배치규정을 따른다.	좌동	좌동
	4-3 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우 역할 분담정도와 협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4-3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우 역할 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좌동

3) 활동환경

인증기준	확인 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5-1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좌동	좌동
	5-2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좌동	5-2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단, 사진 및 홍보자료로 증빙 가능)
6. 안전관리 계획	6-1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사전안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
	6-2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가 계획되어 있다.	좌동	좌동
	6-3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사고대책과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4-3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우 역할 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좌동
	6-4 제37조의2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6-5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협업 또는 컨소시엄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운영기관 모두)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대인 8천만원 이상, 대물 2백만원 이상)	좌동	좌동
	-	-	6-6 방문국의 국정이 불안한 상황(전쟁, 질병, 분쟁 등)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국과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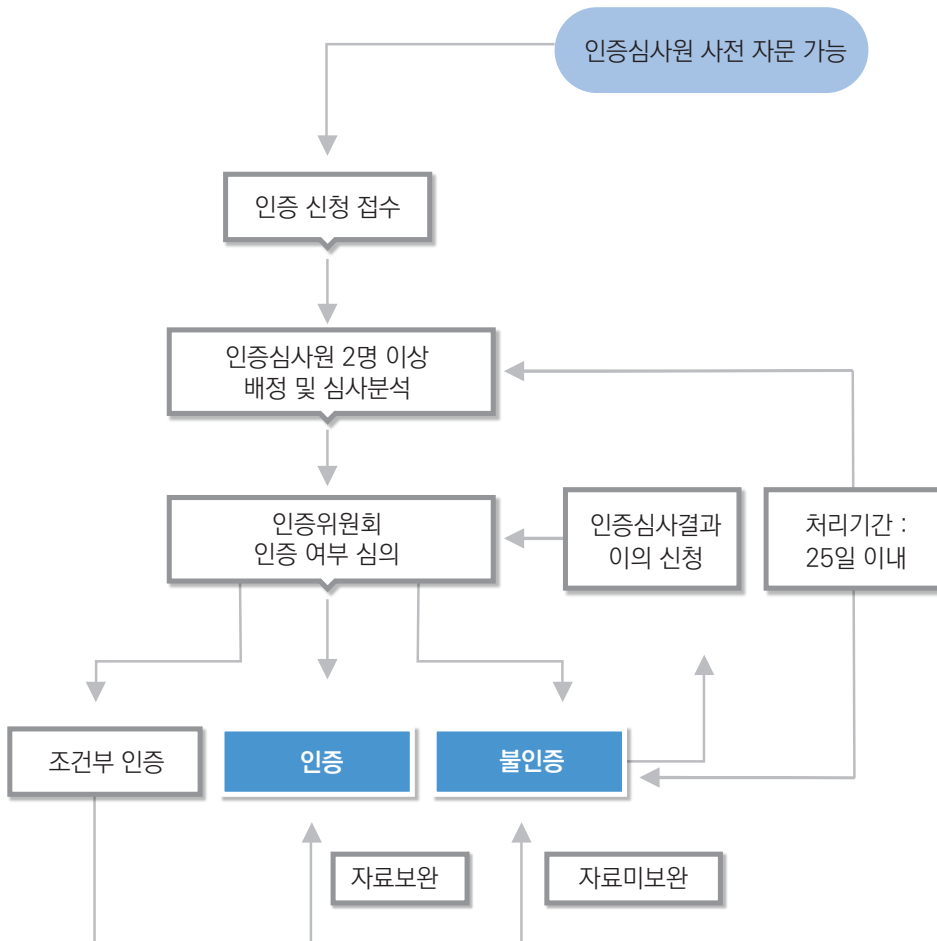
□ 개별기준

인증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숙박 관리	개별1-1 참가자의 숙박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다.	좌동	좌동
	개별1-2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좌동	좌동
2. 안전관리인력확보	개별2-1 참여청소년의 숙박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 영양관리자 자격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식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별3-1 영양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
	개별3-2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
4. 이동 관리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별4-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관리 계획이 있다.	좌동	개별4-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관리 계획이 있다.(단, 이동계획 및 이동수단 명시)
5. 휴식 관리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별5-1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좌동	개별5-1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단, 해외주관 프로그램 경우 탄력적 적용)

□ 특별기준

인증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전문지도자의 배치	특별1-1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별표 9-2]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좌동	좌동
2.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특별2-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좌동	좌동
	특별2-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좌동	좌동
	특별2-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좌동	좌동
3.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특별3-1 중요프로그램(규칙 제15조 8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외한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특별3-2 활동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관련된 사고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기관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특별3-3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숙소와 식단이 관리되고 있다.	좌동	좌동

[별표 2] 인증절차 - (제29조 관련)



[별표 3] 인증여부 판단 기준 - (제30조 관련)

1. 확인요소별 판단 기준
 - 가. 0(자료없음) =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 나. 1(미흡) = 해당 자료는 있으나 인증기준 충족에 미흡한 경우
 - 다. 2(충족) = 해당 자료는 있고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2. 인증신청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인증 확인요소에 대해 1점 이하를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할 수 없다.

[별표 4] 인증심사 과정 - (제34조 관련)

심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자료 수령 및 제출 자료 확인 • 인증심사 서약서 제출
▽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분석표 작성 • 서류심사 결과 작성
▽	
현장방문 (필요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기관 및 활동 현장 방문 확인 및 분석 • 현장방문 결과 정리 및 작성
▽	
결과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분석, 정리 및 기준별 최종 점수 부여
▽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등 제출(활동진흥원) • 인증심사결과 인증위원회 출석·화상 보고 (필요시)

[별표 5]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절차 (제40조 제4항 관련)

이행여부 확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자료 수령 및 내용 분석 • 인증기준별 이행여부 확인 대상 분석
▽	
이행여부 확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련활동 실시 현장 방문 실사 • 지도자, 참여청소년 등 관계자 인터뷰 및 조사 •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에게 항목별 확인결과 고지 • (필요 시) 참여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활동진흥원으로 통보
▽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여부 확인 결과보고 자료 정리 •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완료 7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 제출 (활동진흥원) • 이행여부 확인 결과 인증위원회 출석·회상 보고 (필요시)

[별표 6]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기준 (제40조 제5항 관련)

□ 공통기준

영역	확인기준	확인요소
활동 프로그램	1. 대상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상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2. 자원 및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하는 기자재 등 자원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상태 및 수량이 적합하다.
	3. 평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참여청소년에게 활동기록 등 인증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력	4. 전문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담당자와 전문 인력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전문지도자는 계획된 수준대로 참여하고 있다.
	5. 배치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별 지도자 수는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지도자 교육결과 및 개별 지도자의 숙지수준이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6. 지도역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서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청소년에 대해 강요나 폭력이 없고, 지도자의 역할을 준수하고 있다.
활동 환경	7. 확보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활동장소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활동장소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8. 교육 및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청소년에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전원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위생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개별기준

영역	확인기준	확인요소
숙박/ 이동형	1. 숙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청소년 인원에 적합한 숙박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야간생활 지도는 인증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안전 및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담당자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배치된 지도자의 성범죄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청소년에게 적합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
이동형	3. 이동 및 휴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 및 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및 지도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

[별표 기]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평점 적용 기준 (제40조 제5항 관련)

□ 확인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그렇지 않다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함
보통이다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하였으나, 제시된 대안이 인증수준에 도달함
그렇다	인증 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함

□ 확인기준에 대한 평점 적용 기준

3점	확인요소가 모두 '그렇다'이다.
2점	확인요소에 '그렇지 않다'를 포함하지 않는다.
1점	확인요소에 1개 이상 '그렇지 않다'를 포함한다.

[별표 8]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결과 판정 기준 - (제41조 관련)

등급	판정기준	조치사항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항대로 운영 • 보완개선 사항이 없고 이행확인 점검표에 1점 항목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2년간 이행여부 현장확인 대상 제외 가능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나 그 대안이 인증수준을 충족하여 운영한 경우로써 이행확인 점검표에 1점 항목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년간 이행여부 현장확인 대상 제외 가능 ※ 보완개선 조치사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치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실시 가능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시하였으나 동기, 내용 등이 경미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인증 받은 사항대로 운영하였으나 참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위험 요소가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회차 이행확인 실시 가능 ※ 시정조치사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치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실시 가능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시하여 인증 사항의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요청받은 보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인증 취소 검토

[별표 9-1]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 (인증기준 4번 관련)

〈개정 2017. 8. 23.〉

실내	실외	야외	지도자 자격	비 고
30:1	30:1	15:1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최소 1명 이상 ※ 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소년수가 30명 초과 시, 매 20명 단위로 지도자 1명씩 추가 배치 ※ 실내프로그램 제외 • 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인증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은 배치지도자 수의 50%를 축소하여 배치가능 •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 배치

※ 실내 : 집, 또는 건물의 안, 지붕 혹은 벽이 있는 장소

※ 실외 : 인증활동을 운영하는 건물의 주변 (예 : 수련시설의 운동장, 캠프파이어장, 체험장 내 영농체험장 등)

※ 야외 :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노천. 주 활동장소의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청소년활동보험 혹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활동 공간(예 : 공원, 하천, 사적지, 유적지, 시장 등)

※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경우라도 수상·수중 혹은 연안에서 운영되는 활동은 별표 9-2의 수상활동, 스키장에서 운영되는 스키활동은 별표 9-2의 산악활동 배치비율을 준용함

[별표 9-2]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 (인증기준 특별 1번 관련)

〈개정 2017. 8. 23., 2019. 10. 16.〉

참여형태 활동구분	세부 내용	체험 과정 참여(청소년:지도자)	사전교육 교육대기	지도자 수준
수상활동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5:1	30: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중형 체험활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해수면의 수상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1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수상과 수중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	20: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 단, 인명구조요원 1명이상 포함
	내수면의 수상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1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내수면의 래프팅 활동	래프팅 보트당 1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활동	2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혹은 생활스포츠지도자(수영)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 스키, 4시간 이상 야간산행	15:1	30:1	관련자격증 소지자 혹은 3년이상 해당 활동 지도 경력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해당분야 유자격자 배치
장거리 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1:1		

※ 항공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지도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9-3] 위험도가 높은 활동(규칙 제15조2)
관련 확인요소, 인증기준 특별2 관련**

수상활동	수상-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수상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수상-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수상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수상-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수상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항공활동	항공-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항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항공-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항공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항공-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항공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산악활동	산악-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산악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산악-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산악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산악-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산악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장거리 걷기 활동	장거리-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장거리 걷기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장거리-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장거리 걷기 활동 경로와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장거리-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장거리 걷기 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그 밖의 활동	기타-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그 밖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기타-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그 밖의 활동의 활동장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기타-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그 밖의 활동 운영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별표 10] 전문인력 교육과정 지정 기준

항목	기준
1. 시설·설비 기준	가. 안전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50제곱미터 이상) 나. 행정실(10제곱미터 이상) 다. 화장실(남녀로 구별되어야 한다)
2. 강사 기준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안전교육 강사를 2명 이상 둘 것
3. 운영 기준	12시간 이상의 안전관련 교육과정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것
4. 그 밖의 기준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26조의3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별표 11] 삭제 <2017. 8. 23.>

[별표 12] 유효기간 연장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제38조 관련)

● 유효기간 연장 심사 절차

심사절차	접 수	서류검토	서류심사	심의·의결	결과발표
주 체	운영기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소요기간	해당 기간 내	10일	20일	10일	5일

㉠ 유효기간 연장 심사 기준

▶ 확인 기준 및 확인 요소

영역	확인기준	확인요소
기본 요소	- 인증기준의 도달여부 확인 - 기 인증프로그램의 일치여부 확인	- 현 시점의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를 충족하였는가? (필요 시, 활동환경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기존 인증프로그램과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이 동일한가?
프로 그램	- 인증 사항 준수여부 확인	- 인증신청 시 계획(프로그램 구성, 지도력, 활동환경)에 따라 운영하였는가? - 프로그램 운영 이후,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사후 관리	- 인증 프로그램 사후관리 준수 여부 확인	- 변경승인 요청 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였는가? - 실시일자통보의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운영하였는가? - 이행여부확인결과 시정 및 부적합 사항이 없는가?
활동 결과	- 인증프로그램 결과보고 준수 여부	- 활동결과를 인증정보시스템에 기록하였는가? - 활동결과 보고의 기한을 준수하여 등재하였는가?

[별표 13] 유효기간 연장심사 평점 및 판정 기준 (제38조 관련)

〈개정 2017.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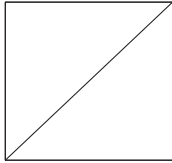
● 유효기간 연장 심사 평점 기준 (확인요소에 대한 평점 기준)

2점	기준을 준수하고 그 내용이 확인됨
1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판정 기준

결 과	판정기준	조치사항
1년연장	모든 확인요소가 2점 이상인 경우	이행여부확인 실시
연장불가	확인요소 중 1가지 이상이 1점 이하인 경우	유효기간의 종료

[별지 제1호 서식] - (제9조 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년 월 일	20 (제 회)

의결사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별지 제3호 서식] - (제9조 제4항 관련)

제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제안자

의 결 결 과	가 · 부		가 부 내 역
	가	부	
			별 첨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결의서

수 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20

제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 부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 음 -

의안번호	안 건 명	가·부	
		가	부
제 호			

20

위원 (인)

[별지 제6호 서식] - (제30조 관련)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신청내용	접수번호							인증신청자 (기관명)						
	활동명													
	활동유형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숙박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모집형태	<input type="checkbox"/> 개별모집		<input type="checkbox"/> 학교연계		<input type="checkbox"/> 단체연계							
		활동영역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	해당/해당없음			국제활동유무			해당/해당없음							
최초활동일자														
심사결과	총점	()점												
	평점	공통기준						개별기준					특별기준	
		1	2	3	4	5	6	1	2	3	4	5	1	2
	()점						()점					()점		
심사 종합의견														
불임 : 인증심사분석표, 심사보고서 각 1부 접수번호 ()건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제30조 관련)

		인증심사분석표		
기준번호		심사내용 (제출서류)	심사의견	점수
공 통 기 준	1			
	2			
	3			
	4			
	5			
	6			
개 별 기 준	1			
	2			
	3			
	4			
	5			
특 별 기 준	1			
	2			
합 계				

※ 인증기준별로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 (제34조 관련)

인증심사 현장 방문 신청서			
신청 대상	접 수 번 호		인 증 신 청 자 (기 관 명)
	활 동 명		
신청 내용	방 문 일 정		
	방 문 사 유		
	협 조 요 청 사 항		
<p>위와 같이 인증심사 현장 방문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p>			

[별지 제9호 서식] - (제35조 관련)

접수번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재심사 신청서			
신청 대상	인 증 신 청 접 수 번 호		기 관 명
	활 동 명		
신청 내용			
<p>위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재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10호 서식] - (제36조 관련)

발급번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 ◆ 인 증 번 호 :
- ◆ 운 영 기 관 명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 ◆ 활 동 명 : (유형표시), 활동명
- ◆ 인 증 유효 기 간 :
- ◆ 주 요 활 동 장 소 :
- ◆ 대 상 및 인 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인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 (제37조 관련)

인증수련활동의 표지



[별지 제13호 서식] - (제39조 관련)

접수번호								
인증사항 변경 승인 요청서								
신청인	인증번호	제 호	기 관 명					
	활동명							
신청내용	변경항목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래머	<input type="checkbox"/> 전문지도자	<input type="checkbox"/> 운영담당자	<input type="checkbox"/> 활동장	<input type="checkbox"/> 예산	<input type="checkbox"/> 기관정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변경 전 · 후 비교표와 관련증빙서류 별첨						
위와 같이 인증사항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 (제41조 관련)

프로그램 운영자 교부용				
보완 · 개선 요청서				
심사 개요	인 증 번 호	제 호	활 동 명	
	심 사 기 간		심 사 장 소	
보완 · 개선 요청사항		1.		
		2.		
		3.		
		4.		
		5.		
		6.		
		7.		
		8.		
		9.		
		...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 개선을 요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p>				

[별지 제16호 서식] - (제43조 관련) <개정 2017. 8. 2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접수번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10px;"></div>					
인증수련활동 실시 일자 통보서					
기본 정보	인증번호	제 호	기관명		
	활동명				
통보 내용	활동일자				
	활동대상	연령 () 세 / 인원 () 명			
	활동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숙박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input type="checkbox"/> 학교단체숙박형			
	운영담당자	성명		연락처	
	모집형태	<input type="checkbox"/> 개 별 모 집			
		<input type="checkbox"/> 단 체 모 집 (단체명 :)			
		<input type="checkbox"/> 학 교 모 집 (학교명 :)			
일 정 표	* 첨부				
사전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신 고 (신고번호 :) <input type="checkbox"/> 해 당 없 음				
<p>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 실시 일자를 통보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17호 서식] - (제45조 관련) <개정 2017. 8. 23.>

발급번호

제 호

인증수련활동 참여 확인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활 동 기 간 :

○ 활동내용

참 가 일 시	활 동 유 형
인증수련활동명 [제 호]	
운 영 기 관 명	
주 요 활 동 내 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 (별표 9-1호 관련)

지도자 승낙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자 우 편	
전 화		휴 대 전 화	
신 청 기 관 명			
활 동 명			
지도기간 및 시간			
지 도 역 할	※ 활동 운영 시 실제 담당할 역할을 요약 기술		
<p>본인은 귀 기관에서 인증 신청한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input type="checkbox"/> 전문지도자, <input type="checkbox"/> 보조지도자로 해당 지도 역할을 담당할 것을 승낙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인 증 신 청 기 관 명</p>			

[별지 제19호 서식] - (제34조 관련)

인증심사 현장 방문 보고서			
프 로 그 램 개 요	접 수 번 호		
	프 로 그 램 명		
	기 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현 장 방 문 일			
심 사 결 과	심 사 내 용	▶ 중점내용	
		▶ 관계자 면담결과	
		▶ 심사종합결과	
	기 타 의 견	▶	
<p>위와 같이 접수번호 (0000-000) 건의 현장방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20호 서식] - (제45조 관련) <개정 2017. 8. 23.>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서			
이 름		생 년 월 일	
인 증 번 호	제 호	활 동 명	
운 영 기 관 명		활 동 장 소	
활 동 일 자 (기 간 / 시 간)		활 동 유 형	
프로그램 개요			
담 당 자		기 관 연 락 처	
▶ 활동참여 동기			
▶ 활동내용 및 소감			
▶ 활동 이미지			
▶ 지도자 의견			

[별지 제21호 서식] - (제40조 관련)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자체 점검표							
인증번호	제	호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활동장소							
평가점수 (총괄)	기본 확인	실시일자 통보		변경사항 확인	활동기록 등재		
	영역 별 확인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개별기준1	개별기준2	
※ 이행여부 확인 자체점검표 작성방법 참조하여 상,중,하로 기재							
<p>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을 자체 점검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담당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22호 서식] - (제42조 관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미 실시 사유서			
인 증 번 호	제 호	기 관 명	
활 동 명		유 효 기 간	
미 실시 사유	구 분	※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중복 가능) <input type="checkbox"/> 국가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인근 지역 내 유행성 질병으로 인한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운영기관의 휴·폐업 및 독립 등의 변화로 인한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 부 사 항	※ 관련한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바랍니다.	
향 후 실 시 계 획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2호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의 미 실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 인증수련활동 활동 결과 기록 (제44조 관련)
 <개정 2017.8.23.>

제()호 인증수련활동 활동 결과보고 ()차

개 요				
인증번호	제 호	활동명		
참가인원	총()명	운영 담당자	성명	
활동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숙박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input type="checkbox"/> 학교단체 숙박형		연락처	
		(안전) 전문인력	성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일 (박 일), 총()시간	사전 신고여부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신고 (신고번호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참가자정보				
참가형태	<input type="checkbox"/> 개별		담당지도자 (교사)	성명
	<input type="checkbox"/> 단체	(단체명)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학교	(학교명)		
개별 상세정보	교 급			
	<input type="checkbox"/>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프로그램 운영 세부 사항				
운영 세부사항	<input type="checkbox"/> 중요프로그램 내용			
	<input type="checkbox"/> 안전사고 발생 상황			
붙임	활동 일정표 1부 (학교단체 숙박형의 경우)			
	개별 청소년 활동기록 1부.			
	보험 가입 증권 1부. ※ 신청 시, 계획으로 보험을 증빙한 경우 또는 인증 증빙서류에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증빙			

[별지 제25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 기관·단체	명칭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별지 제26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제 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서

안 전 교 육 위 탁 기 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7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 지정취소
[] 업무정지 통지서

기 관 명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사유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지정취소 된 경우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서를 200 년 월 일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가까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